

2003년도 (제1권)

조 정 백 서

□ 2003.1 ~ 2003.12 □

국 무 조 정 실

< 목 차 >

I . 2003년도 조정현황 총괄 1

II . 2003년도 조정실적

1. 완료과제 7
2. 조정을 진행중인 과제 87

□ 참고자료

1.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총리훈령) 102
2. 국무회의 보고자료 111
 (1) 정책조정절차 제도화 방안 112
 (2) 2003년도 정책조정실적 및 마무리계획 113
3. 주무간사회의 운영실적 114
4. 사회갈등과제 관련 119
 (1) 2003년도 사회갈등해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20
 (2) 2003년도 사회갈등 24개과제 현황 121

I . 2003년도 조정현황 총괄

1. 여건변화 및 대응

- 우리사회의 민주화·다원화의 진전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권위적·폐쇄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게 되었음
- 이러한 우리 사회전반의 변화에 부응하여 참여정부는 자율과 분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개방과 참여의 의사결정구조를 지향
- 참여정부의 이러한 국정운영방식의 변화는 정책조정과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
 - 정책결정 이전에 부처간 서로 다른 의견을 개선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정책혼선이나 정부내 조정기능 부재 등으로 비쳐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정책 결정 이전의 부처간 이견에 대해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 및 시스템을 제도화 할 필요

2. 정책조정체계 제도화

-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총리훈령) 제정·시행(03.10.31)
 - 부처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①조정이전 부처간 협의단계 ②조정단계 ③조정이후 사후관리 단계로 나누어 관리
 - * 조정이전단계 : 사전협의 의무화, 공개시 협의가 필요한 시안임을 밝혀 공개
 - * 조정단계 : 당사자조정→정책분야별 조정→총리실 조정의 절차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총리실에서 직접 조정
 - * 조정이후단계 : 합의결과 이행실태 확인·평가
 - 조정과제의 등록, 조정신청, 조정시한 설정 및 추진상황 점검 체제 확립

□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시스템 도입

-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시스템을 도입 (03.5)하여 매주 2회 운영

* 1~2차 화물연대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담배값 인상 방침 확정, 철도노조 관련 공적연금간 연계방안 확정 등

□ 4대분야 주무간사회의 운영

- 4대분야 주무부처 간사회의를 신설(03.8)하여 격주로 운영

* 청와대, 국무조정실, 재경부, 교육부, 통일부, 행자부 참여

- 국무조정실 및 4대분야 주무부처의 조정활동 실적 및 향후 조정계획을 점검·독려

* 관계차관회의, 관계장관회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상정 등 조정과제 처리방향 제시

⇒ 중앙행정기관간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훈령제정), 관리체계(주무간사회의) 및 최종 조정시스템(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의 확립으로 정책조정 시스템의 제도화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

3 2003년도 정책조정과제 현황

2003.12.31 현재

구분	완료 등	조정중	계
국무조정실	36	7	43
재정경제부	25	3	29
교육인적자원부	-	1	1
통일부	1	1	2
행정자치부	4	-	4
계	66	13	79

4. 조정과제 목록

(1) 조정을 추진중인 과제(13건)

	과제명	조정부처	주관부처	관계부처
1	자격기본법 개정 관련	국조실	교육부	노동부
2	한국영화의무상영제(Screen Quota) 관련	국조실	문광부	재경부
3	해외문화홍보원 일원화	국조실	문광부 홍보처	문광부 홍보처 외교부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국조실	정통부	공정위
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국조실	건교부	행자,예산,
6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국조실	산자부	정통부
7	서해 어로한계선 이북어장 어선조업통제	국조실	해수부	국방부
8	오염물질의해안배출관리법(안) 제정	국조실	해수부	환경부
9	수도권규제 합리화 관련	재경부	산자부	재경부
10	우체국 금융개편	당사자협의중 (경제분야)	정통부	재경부 금감위
11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통계조정	재경부	노동부 통계청	중기청
12	유아교육, 보육행정체제 정비	교육부	교육부	복지,여성
13	국립현충원 관리권 관련	통일부	국방부	보훈처

(2) 완료과제(66건)

	과제명	조정부처	주관부처	관계부처	조정결과
1	유형업소종사 외국인여성 무희 대책	국조실	법무부	문광,노동	외국연예인 비자발급 중단, 실태조사 실시, 단속강화
2	영동군 군폐기시설 관련	국조실	국방부	행자,예산	지원사업 재원확보 방안 확정
3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기간 단축	국조실	국방부 병무청	재경, 산자,과기	03.10월부터 복무기간 단축
4	월드컵잉여금 처리대책	국조실	문광부	예산처	잉여금 처리방안 확정
5	애견미용사 업무에 대한 소관	국조실	농림부	복지,교육	농림부에서 담당토록 함
6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설치	국조실	산자부	정통부	산자부안대로 별도 설치토록 함
7	천연가스버스 이동충전소 대책	국조실	산자부	환경부	이동충전소 허가유예기간을 04.3월까지 연장
8	국민연금 적용확대 관련	국조실	복지부	교육,산자	영세사업장 보험료 부담을 고려 시행시기 조정 등
9	간호조무사자격제도 개선	국조실	복지부	교육부	실업계고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 부여기로 함

	과제명	조정부처	주관부처	관계부처	조정결과
10	지방공사의료원 의료서비스 평가	국조실	복지부	행자부	병원의료서비스 평가시 지방공사의료원을 포함하기로 함
11	수도권대기질환경개선특별법	국조실	환경부	산자부	특별법안 합의
12	세계 물의 날 행사 관련	국조실	환경부	건교부	세계 물의 날 행사는 환경부에서 주관, 세계 물포럼은 건교부에서 수석대표로 참석
13	경유승용차 시판허용 문제	국조실	환경부	산자,재경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기준 조정 합의
1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	국조실	환경부	산림청	식물부분은 기존의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함
15	고용허가제 도입 및 불법체류자 처리	국조실	노동부	재경,법무, 산자,중기, 노동,법제	고용허가제 법안 통과(03.7.31)
16	통합복권법 관련	국조실	국조실	관계부처	통합발행 및 수익금 용도 확정
17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국조실	중기청	노동부	특별법안 마련
18	분당선관련 행정협의조정 위원회	국조실	철도청	서울시 토공	사업비 부담비율 확정
19	건강가정육성기본법 및 평등가족기본법 제정	국조실	복지부 여성부	-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기로 합의
20	주5일 근무제 실시 관련	국조실	노동부	산자부등	입법완료
2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국조실	노동부	인사위	인사위 심의 통과
22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국조실	환경부	교육부	이견해소
23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국조실	정통부	공정위	스팸메일 규제 정통부에서 하기로 함
24	수도권대학 신설 관련	국조실	건교부	교육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도권 대학신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함
25	판교신도시내 학원단지 조성	국조실	건교부	교육부	학원단지 조성계획 백지화 결정
26	의장법 개정	국조실	특허청	산자부 문광부	의장법 명칭을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 의장이라는 용어는 디자인으로 개정기로 함
27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국조실	복지부	재경부 예산처	기금운영위원회 상설화, 소속은 복지부로 하기로 함
28	백두대간보전법 제정	국조실	농림부 환경부	-	법명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로 하기로 함 법안은 환경부와 산림청 공동소관으로 함 정책방향은 환경부가, 정책수립은 산림청이 주관
29	집회시위시 확성기 소음규제	국조실	환경부 경찰청	-	소음진동규제법에 확성기소음규제근거 설정, 집시법에 준수 의무 및 벌칙규정 신설기로 함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이 환노위에서 부결(11.13)됨에 따라 집시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추진중(11.19 행사위 통과)
30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제정	국조실	농림부 복지부	-	농림부 법안에는 농어민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종합적으로 규정, 복지부 법안에는 지원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31	재외동포법령 개정	국조실	법무부	외교부	관련법령 정비 완료(중국등 교포 차별규정 폐지 하되, 불법체류 다발국가 재외동포 비자발급 제한)
32	공적연금간 연계방안 마련	국조실	건교부	예산처 행자부	현직 철도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20년 한정가입 허용
33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재원분담	국조실	산자부	건교부 행자부 예산처	기관별 재원분담방안 합의
3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 도입	국조실	법무부	복지부	동제도 도입 합의, 내년 상반기중 입법추진
35	군기능인력 양성방안	국조실	국방부	건교부등	증원규모를 조정하여 최종 양성계획 확정

	과제명	조정부처	주관부처	관계부처	조정결과
36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지역법 통합	재경부	재경부 산자부	건교,해수	통합하되, 관리권은 현행대로 함
37	미 다코다(차량) 덮개 허용 문제	재경부	재경부 외교부	건교부	덮개 허용기로 결정
38	민간투자제도 개선	재경부	재경부	예산처	프로젝트 금융회사법 제정, 재무적투자자의 민자참여 촉진 등을 하반기중 추진기로 함
39	DDA 교육서비스 양허안 제출	재경부	재경부 외교부	교육부	대학교육, 성인교육 등 기개방분야에 대한 양허안 제출(03.3) * 교육계와의 갈등은 설득 추진
40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재경부	재경부 외교부	농림,예산	관계부처 합의후 동의안 국회 제출(03.7)
41	이공계 해외유학 지원사업 인원확대	재경부	교육부 파기부	재경,예산	인원 확대하지 않기로 조정
42	외국인학교설립 운영규정 제정	재경부	교육부	재경부	동규정 입법 재추진기로 합의
43	무방류시스템 도입	재경부	산자부	환경부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도입기로 결정
44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양성자가속기사업 연계 문제	재경부	파기부	산자부	연계결정 방침 확정
45	스포츠, 여가산업 규제 합리화	재경부	문광부	환경부	골프장 총면적을 임야면적의 5%로 확대
46	경차보급 활성화	재경부	산자부	건교, 행자	규격확대 및 지원시책 강화
47	수도권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규제 개선 (LG필립스 파주공장)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설립허용토록 합의
48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설립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49	미국의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 대책	재경부	산자부	외교부	WTO에 즉시 제소기로 결정
50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	재경부	정통부	산자, 공정,특허	연내 법 제정기로 합의
51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재경부	해수부	재경부	세제지원방안 확정
52	인천공항 제2연륙교 건설 관련	재경부	예산처	재경,건교	실시협약체결시 총사업비의 상한선을 두어 확정하고 추후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협약에 반영하여 AMEC사와 실시협약 체결
53	중소기업 정책방향	재경부	중기청	산자부 등	관련부처 업무중복 최소화되도록 조정
54	벤처기업 M&A 활성화 대책	재경부	중기청	금감위	소규모 M&A 활성화 기반 구축
55	자연휴양림 제도 개선	재경부	농림부	환경부	형질변경 면적 탄력운영 등 이견 해소
56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재경부	농림부	재경부 금감위	상호금융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는 현행 유지기로 함
57	고속철도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파세	재경부	건교부	재경부	파세기로 함
58	경제자유구역 추진관련 후속법령 정비	재경부	재경부	환경부 복지부 교육부 등	각종 부담금(7개) 감면 합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 설립 합의 경제자유구역내 학교설립 관련법 제정 합의
59	담배가격 인상	재경부	복지부	재경부 등	내년 하반기부터 인상기로 합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논의기로 함)
60	미래성장산업 품목 조정	재경부	파기,산자, 정통	-	부처간 중복품목 조정 (청와대 조정이후 세부적인 조정은 재경부에서 추진중)
61	방위비 분담협상 주관부처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국방부에서 조정요청 철회, 종결처리
6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정	당사자조정 (사회분야)	여성부	복지부	성매매된자 지원시설 이용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불인정
6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관	당사자조정 (사회분야)	행자부 예산처	-	예산처가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고, 행자부의 역할은 대통령령에 반영기로 함
64	방송법 개정	당사자조정 (사회분야)	방송위	문광부 등	문광위에서 의원입법안 부결, 종결처리
65	지방세법 개정	당사자조정 (사회분야)	행자부	재경부 등	경차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에 대해 50% 국비 지원 합의
66	소비자보호원 관할권 관련	재경부	재경부	공정위	국무조정실에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정부혁신위원회에 이첩(관리종결)

Ⅱ . 2003년도 조정실적

1. 완료과제(66건)

1. 유흥업소종사 외국인여성 ‘무희’ 대책 마련

□ 과제개요

- 연간 약6천명의 외국연예인이 유흥업소 등 종사를 위해 예술홍행(E-6) 비자로 입국하고 있으나, 대부분(83%)이 여성 ‘무희’로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
 - 국내외언론·美의회 등이 문제 제기 및 6월초 美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작성시 우리나라 등급 하향조정 가능성

□ 부처간 이견내용

< 법무부 >

- 공연법상의 공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외국연예인의 활동에 대해 영등위의 공연추천을 즉시 중단하되, 입국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고용추천으로 전환

< 문화관광부 >

- 관광진흥 차원에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이 아니더라도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영등위의 추천 지속 필요

< 노동부 >

- 공연법에서 제외된 외국연예인에 대한 노동부의 고용추천 반대

□ 조정결과 및 후속조치

- 실무조정회의(4. 2)와 부처협의를 거쳐 관계부처합동대책을 마련, 해당부처에 공문시달(5.26)
 - 외국인여성 ‘무희’에 대해서는 6. 1부터 비자발급 전면 중단
 - * 인권침해우려가 낮은 연주가요, 곡예마술인력과 유원시설·국제회의 시설의 여성 ‘무희’ 등은 당분간 종전 절차대로 추천·비자발급
 - 문광부는 유흥업소종사 외국인연예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공연추천제도 개선방안 마련
 - 법무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2. 영동군 軍폐기시설 관련

□ 과제개요

- '99.6 충북영동군에 軍폐기시설이 설치·가동됨에 따라 지역 주민 지원 필요성 대두
- '01.4 당정협의를시 정부지원 추진 결정후 주민 대책위와 수차례 협상을 통해 지역현안 6개사업 126억원으로 지원규모 조정
- 주민 대책위 요구사업 확정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검토 필요

□ 이견내용

< 주민대책위 입장 >

- 軍폐기시설 가동에 따른 지역피해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지원 사업을 요청한 만큼, 전액 국비를 통한 6개사업 조속 추진

< 국방부 입장 >

- 영동군의 폐기시설은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특수시설로 군의 내적요구에 의해 시설이 아니므로 국방비를 통한 지원사업곤란

< 관계부처 입장 >

- 軍폐기시설에 가동을 위한 지역지원 사업이므로 원인을 제공한 국방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

□ 조정결과

- '03. 4.16 관계부처회의 개최, 지원사업 재원확보 방안 확정
 - 당해 사업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지원사업의 해당 부처가 국비부담분을 '03~'04년 사업예산으로 책정기로 합의
 -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 등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 추진

□ 후속조치

- 국방부·행자부·교육부·문광부·농림부 등 '03년 사업집행 및 '04년 예산에 반영

3.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기간 단축

□ 과제개요

- '02.2.15 재경·교육부 등, 이공계 진학촉진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등의 제도개선 논의 제기

□ 이견내용

< 재경부·교육부·과기부 >

- 현역 및 유사대체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었으나 전문연구요원은 '73년 신설이후 현재까지 5년으로 형평 위배
- 복무기간 장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감소로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청소년 이공계 진출 유인 미흡

< 국방부·병무청 >

- 복무기간 단축시 근무순환주기 감소로 신규 인력소요 증가 및 기업체의 안정적 연구인력 확보 곤란
- 복무여건 고려시 특혜로 인식될 수 있고, 현역 등 전반적인 복무기간 단축요구의 확산계기가 될 수 있음

□ 조정결과

- '02.6.12, '02.6.26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1년 단축방안 제시
 - 국방부 단축 필요성은 인정하나 여타 복무기간에 미치는 영향 고려 '03이후 병역법 개정시 단축 검토 합의
- '03.3.25 재경부 주관 관계부처회의시 1년 단축 합의

□ 후속조치

- '03.9.3 병역법 개정, '03.10월부터 단축 복무기간 적용

4. 월드컵잉여금 처리대책 추진

□ 과제개요

- 월드컵잉여금(1,630억원)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문화부, 예산처, 축구협회 등 관련기관의 이견 조정
 - 사용계획 확정분야 : 950억원
 - ▲ 유소년·여자축구 육성(200억) ▲ 축구대표팀 지원(200억)
 - ▲ 장애인복지기금 출연(150억) ▲ 개최도시 지원(300억)
 - ▲ 국가대표선수 지원(50억) ▲ 월드컵자료관 설치(50억)
 - 미확정 분야 : 680억원

□ 이견내용

- 문화부·축구협회 입장
 - ▲ 개방형 축구종합훈련장 건설(500억)
 - ▲ 지역별 인조잔디구장 건설(150억)
 - ▲ 프로축구 시민구단 창단 지원(30억)
- 예산처 입장
 - 체육진흥기금에 적립하고, 기금집행절차에 따라 사용

□ 협의·조정 추진경위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03.4.19)

□ 조정결과

- 680억원 중 650억원은 축구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되, 월드컵 경기장 활용과 연계하여 별도 연구용역을 거쳐 처리계획 수립
- 시민구단 창단지원 30억원은 시민구단에 한하여 지원
 - * 증여처분 완료(월드컵집행위원회 의결(5.22), 문화부 승인(6.2))
 - 축구인프라 구축 관련 (국민체육진흥공단 650억)
 - 시민구단 지원 관련 (대구·대전 30억)

5. 『애견미용사』 업무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

□ 과제개요

- 한국애견미용사협회의 법인설립 허가신청 및 '03년도 국가공인신청 민간자격(애견미용사1,2,3급) 소관부처 선정과 관련, 애견미용사업무에 대한 소관부처가 불분명하여 민원 제기 및 업무조정 요청
 - * 애견미용사(트리머)는 개의 모발커팅, 목욕 등을 통한 피부·모발관리 등 개의 모양을 내주는 기술을 소지한 자
 - * 애견미용사자격은 학원에서 수강 후,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을 거쳐 자격취득('03.6월현재, 학원수:45개소, 자격증 소지자:4500여명)

□ 부처간 이견내용

< 농림부 >

- 애견미용사는 표준직업분류상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 종사자에 속하므로 미용사 자격 및 미용사협회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 보건복지부 >

-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는 그 대상이 사람에게 국한하고 있어 애완동물을 관리하는 농림부가 관장 바람직

< 교육부 >

- 애견 이·미용기술을 교육시키는 기관을 설립, 감독하는 사무는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애견관련 법인설립 및 민간자격 공인심사 업무는 그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에서 처리가 바람직

□ 협의·조정추진 경위

- '03.6.27, 농수산건설심의관실에서 애견미용사관련업무에 대한 관계부처(교육·농림·복지부) 관계관 협의

□ 조정결과

- 농림부에서 수의사업무, 축산업무(축산단체포함) 등을 관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애견미용사업무도 농림부에서 처리토록 조정
- 농림부에서 법인설립허가 등 애견미용사업무를 처리토록 통보('03.7.8)

6.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설치

□ 과제개요

- 산자부는 무역의 고비용 구조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자무역 업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설치를 추진

□ 이견내용

- 독립적 지위의 별도위원회로 설치(산자부, 무역협회)
 - 전자무역의 광범위성, 시급성, 정부의지표명 등의 이유로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확보 및 여러 부처·기관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가능
-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정통부)
 - 개별법에 의한 별도 법적근거 마련이 불필요하며,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 등과 중복문제 야기 가능성

□ 협의·조정 추진경위

-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03.4~5)
-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설치방안 총리 보고('03.5.15)
-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구성·운영방안 확정('03.6.20)
 - ※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총리훈령에 의거 협의·조정기능을 갖는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위원장:국무총리)

□ 조정결과

-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설치를 위한 훈령 제정('03.7.19)
 - 제1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개최('03.12.2)

7. 천연가스버스 이동충전소 대책관련 조정

□ 과제개요

- 국무조정실(월드컵지원단) 주관 관계기관회의에서 이동충전소 도입 결정('01. 12)
- 산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03. 6. 30일까지 시설기준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한국가스공사가 이동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산자부와 환경부는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이동충전소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여 천연가스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02. 7)
- 산자부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시범사업으로 가동중인 이동충전소에 대하여 '03. 6. 30까지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02. 9)
- '03. 6월까지 허가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22개 이동충전소를 철거할 경우, 천연가스버스 운행중단 우려(488대 예상) ⇒ 부처간 이견조정 필요

□ 이견내용

<산자부>

- 허가유예기간 연장기간 중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학교보건법·지자체 조례 등 산자부 소관이 아닌 사항으로 인한 허가유예기간 연장은 곤란

<환경부>

- 인근 고정식충전소 확충, 대체부지 이전,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내의 이동충전소 설치반대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지자체 조례제정 등 대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허가유예기간을 1년 6개월 연장 필요

- ※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50~200m)내에서 이동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허가가 가능 ⇒ 정화위원회에서 부결 결정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 이동충전소는 상대정화구역내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음

□ 협의·조정 추진경위

- 3차에 걸친 조정회의('03.5.7, 5.16, 5.26)를 통해 조정완료

□ 조정결과('03.5.26)

- 산업자원부 : 허가유예기간 연장(9월)을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03. 6. 30 개정완료)
- 환경부 : 미허가 이동충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 철저
- 한국가스공사 : 허가유예기간 이후에도 허가받지 못하는 이동충전소에 대하여는 반드시 철거 또는 폐지

8. 국민연금 5인미만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확대 관련

□ 과제개요 및 조정배경

- 임시·일용직 및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관리하여 사회보험에서 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 대두
- 복지부에서 5인미만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기 위해 '03. 7. 1 시행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추진중에 있었으나 산자부와 교육부에 일부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

□ 부처간 이견내용

- 산자부 : 전사업장 확대 반대
 - 제1안 : 2단계 적용 영세사업장의 적용 1년 더 유예
 - 제2안 : 임시·일용직 근로자 단계별 확대
- 교육부 : 시간강사의 경우 월간 소정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두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기를 희망

□ 조정추진경위

- 관계부처 차관회의(6.23, 국무조정실장주재)를 통해 이견을 조정
 -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03.7.1부터 5인미만 법인·전문직종 사업장 근로자로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확대

□ 조정결과

-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 시행시기 조정
 - 1단계, 2단계 입법안대로 추진, 3단계 시행시기 연기('05.7 → '06.1)
 - ※ 1단계 : '03.7월부터 5인미만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 2단계 : '04.7월부터 공적자료보유 비법인 사업장
 - 3단계 : '06.1월부터 공적자료 미보유 사업장
- 월 80시간 미만 시간강사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사업장 가입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9. 간호조무사 자격제도 개선

□ 과제개요

- 실업계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예정)자에게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 규칙개정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 740시간과 실습과정 78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 근거규정 :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 이견내용

- 간호양성학원의 반발로 관련법령 개정이 곤란하므로 실업계 고교 간호관련학과 신설에 대한 제한 장치 필요(보건복지부)
- 고등학교의 설립 및 학과 설치·운영은 시·도교육감의 소관 사항이므로 이를 규제하기는 곤란(교육부)

□ 협의·조정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가 현행제도의 개선을 위해 규칙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전국간호학원협의회 등의 반대로 추진 중단('02.12)
- 관계부처 1급 조정회의 개최(사회문화조정관 주재, '03.4.22)
- 관계부처 차관간담회 개최(국무조정실장 주재, '03.5.15)

□ 조정결과

- 복지부가 규칙을 개정하여 실업계고 졸업자에게 응시자격 부여
- 교육부는 실업계고 간호학과가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협조
- *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개정('03.9.22)

10. 지방공사의료원 의료서비스 평가

□ 추진배경

- 복지부는 '02.3 의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평가 실시 근거 마련
 - 대통령령에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을 평가대상 의료기관으로 정하여 차관회의에 상정, 행자부 이견으로 보류

□ 부처간 이견내용

< 행자부 >

- 지방공사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이 평가내용중 진료환경분야의 평가와 중복되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에서 제외해야 함

< 복지부 >

-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강화와 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공사의료원도 평가해야 함

□ 조정추진경위

- 관계부처 1급회의(7.8, 사회수석조정관 주재)

□ 조정결과

-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하여도 의료법에 의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 다만, 평가는 다음 합의사항에 따라 실시
 - 복지부가 매 3년마다 300병상 이상인 지방공사의료원(25개)를 평가할 시에는 행자부의 평가지표(진료환경분야)를 받아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자부에 통보
 - 진료환경분야 평가지표는 행자부와 복지부가 긴밀히 협의하여 보완·조정토록 함
- * 의료법시행령 개정 완료(8.5 공포)

11. 수도권대기질환경개선특별법 제정

□ 과제개요

-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 이견내용

-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후 제도 도입여부 결정(산자부)
 - 법제화 후 도입시기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환경부)
- 저공해 자동차 보급 의무화 및 운행차 규제강화
 -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하는 별도규정은 불합리하며, 의무화 대신 경제적 유인제도 도입(건교·산자부)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환경부)

□ 협의·조정 추진경위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법 제정과 경유승용차 국내판매 허용 방침결정('03.3.27)
- 연내 특별법 제정 및 '05년 경유승용차 판매허용 방침 확정('03.5.20, 관계부처 국장급회의 및 '03.5.30, 경제장관간담회)
- T/F를 구성하여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시행령·규칙포함)에 대한 합의안 도출('03.7.3)

□ 조정결과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03.10.28)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03.12.18), 시행('05.1.1)

12. 「세계 물의 날」 행사관련 조정

□ 과제개요

- 2003년도 「세계 물의 날」 행사('03.3.22)와 관련하여 행사주관 문제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조정회의 개최
* 2001년: 환경부 주관, 2002년 : 환경부·건설교통부 합동주관

□ 부처간 이견내용

<환경부>

- 국민건강 및 생활환경개선과 관련된 물의 중요성 홍보를 위해 환경부에서 행사를 주관

<건설교통부>

-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수자원의 중요성 부각을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주관

□ 협의·조정 추진경위

- '03.1.10 국무조정실(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조정완료

□ 조정결과

- 국내에서 개최하는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는 환경부가 주관
- 일본에서 개최되는 「세계 물 포럼」은 건설교통부에서 수석대표를 맡음
※ 3.22 환경부 주관으로 「세계 물의 날」 행사를 개최, 3.16~23 「세계 물 포럼」 행사에 건설교통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

13. 경유승용차 시판허용 관련 조정

□ 추진배경

- '00.10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EU보다 높은 경유승용차 배출가스기준을 설정, 국내시판 불허
 - ※ 현 경유승용차 기준은 유럽대비 질소산화물 25배, 미세먼지 5배 강한 기준임
- '01년부터 외국기관 및 일부 국내업체에서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
 - ※ EURO-3 : EU 현행기준, EURO-4 : EU '05년 적용기준

□ 협의·조정 추진 경위

- 민·관 합동의 “경유차 환경위원회”에서 합의안 제시('03.2.14)
 -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을 전제로 한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조정방안 제시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유승용차 허용방침 확정·발표('03.3.27)
 - 배출허용기준을 EU수준으로 조정하여 '06년부터 EURO-4 차량을 판매토록 하되, '05년에 한하여 EURO-3 차량의 판매허용
 - 대기질 개선대책 병행 추진
 - ※ 시민단체는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제정, 에너지가격 조정방침 불분명 등을 이유로 경유승용차 시판허용 철회 요구
-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03.5.10, 5.12)
 - 수도권특별법의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T/F를 구성하기로 합의
- 관계부처 국장회의(위원장 : 환경부차관, 5.20) 및 경제장관 간담회 개최(5.30)
 - 수도권특별법 연내 제정, 에너지상대가격 조정검토 착수 등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안 도출
 - ※ 환경단체, 산업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회의(7.3)에서 특별법 주요내용 합의

□ 관계부처 입장

<재정경제부>

- 에너지 상대가격은 경제장관간담회('03.3.25)에서 결정된 대로 경유차 판매 추이 등을 보아 '05년중 검토

<산업자원부>

- 사업장오염총량관리 등을 포함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

<환경부>

- 에너지 상대가격을 '04년 말 이전에 조정,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 것을 전제로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개정

□ 조정결과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연내 제정
 -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등 정부 결정사항의 구체화를 위한 T/F 구성·운영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제정('03.12.18), 시행('05.1.1)
-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관련
 - 국제수준으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검토에 착수하고, '04년 말까지 에너지가격 조정방침 결정 및 '05년 중 입법추진
- 경유승용차 배출가스기준 조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03.12.10)

1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 관련 조정

□ 과제개요

- 환경부가 야생동·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중 식물부분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통합한 별도의 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이 부처간 기능중복, 산림의 경제적 기능 위축 등을 우려하여 이의 제기
-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 법안은 야생동·식물 집중적으로 규정

□ 이견내용

- 환경부는 제정 법안이 야생동·식물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이므로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를 요하는 특정식물(멸종위기종, 보호야생식물 등) 뿐만 아니라 야생식물 전반(현황조사, 보호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산림청은 대부분의 식물이 산림청 소관업무인 산림내에 서식하고 있어 산림청 기능과 중복(산림법 적용 등)되므로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

□ 협의·조정 추진경위

- 환경부와 산림청이 '01.6~'03.5까지 7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조정 추진
- 국무조정실에서 3차례 회의를 개최('03.5.7, 5.16, 5.22)하여 조정
 - 부처권한과 관련이 없는 용어정의, 기본원칙 조항은 제정안을 유지
 - 부처권한 규정은 업무영역 침해소지가 없도록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부장관의 권한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함

□ 조정결과

- 조정내용을 반영한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03.11) 및 본회의 통과('03.12.30)

15. 고용허가제 도입 및 불법체류자 처리

□ 과제개요

-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 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국가이미지 실추 방지 및 적정규모의 외국인력 도입·활용 등을 위해서
 - 기업은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국가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외국인력 대책 수립

□ 주요쟁점 및 조정추진 경위

- '02.12.10 국무조정실에 『외국인력 제도개선 기획단』을 설치, 운영
 - 동 기획단에서 수차례의 관계부처 협의, 민·관 합동 토론회를 거쳐 개선대책 마련
 - ▲ 기획단(단장: 사회문화조정관, 총 20명): 공무원(13명), 민간위원(7명)
- 부처별 의견
 - 재경부 : 고용허가제 도입 및 불법체류자 합법화는 찬성하나 자진출국자 재입국 및 취업시 우선 배려 등 인센티브 부여는 바람직하지 않음
 - 법무부 : 고용허가제 도입은 정주화 등 부작용 방지대책과 동시 검토, 불법체류자 출국유예 신중 필요
 - 산자부, 중기청 : 고용허가제 도입과 불법체류자 유예조치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상승 등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점진적 도입이 바람직
 - 노동부 : 고용관리제 조속 도입 및 불법체류자 유예조치 필요
 - 법제처 : 불법체류자 합법화는 원칙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추진 하되 입법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출국유예조치 방안 검토 필요

- 2.19 환노위에 고용허가 관련법안이 이재정의원 대표발의로 상정
- 3.25 법무부는 금년 3월말까지 출국유예된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8월말까지 출국 일괄 재유예 결정
- 3.29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최종 확정
 - 불법체류자는 기존 정부방침에 부합되도록 체류기간 3년을 기준으로 하되 3년 미만자는 국내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2년 이내에 합법취업자로 전환(고용허가법에 부칙으로 규정)
 -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되, 입법화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로 중소기업 인건비 상승 등 오해를 불식

□ 조정결과

- '03.8.16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실시(9.1~11.29)
 - 불법체류자 313천명중 190천명을 합법화 조치('03.9.1~11.29), 130천여명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자진출국방안·밀입국방지 대책 등 추진

16. 통합복권법 제정관련

□ 과제개요

- 10개 개별법에 근거하여 방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복권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권수익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합복권법 제정 필요

□ 협의·조정 추진 경위 및 조정결과

-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03.5.31)
 - 복권법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정리
- 각종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들의 여론 수렴 ('03.5.27 ~ 6.5)
- 제6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 개최 ('03.8.21)
 - 복권발행주체,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통합복권법(안)의 제정 방향 결정
- 정부(안) 국회제출('03.10.27)
 - * '03.2월 ~ '03.11월중 6개 의원입법(안) 발의
- 통합복권법 국회의결('03.12.29)

※ 통합복권법 주요내용

- 10개 발행기관을 통합하여 총리 산하 복권위원회로 발행주체를 단일화
- 복권위원회를 신설하여 복권관련 주요정책 결정
- 복권기금을 설치하여 복권수익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 복권수익금의 30%는 기존 10개 발행기관에, 70%는 새로운 용도에 배분

□ 후속조치

- 통합복권법 제정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04.1월 초순부터 『복권위원회설립추진단』 운영
 - 법 시행('04.4.1)과 동시에 복권위원회를 발족하여 복권의 발행 및 관리, 기금 운용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04.3월 하순까지 완료 예정

17.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지속되어 경영애로 및 경쟁력 잠식
- 참여정부는 구조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수차례 천명(대선공약, 당정협의 등)

□ 이견내용

- 특별법상의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과 노동부의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간의 조화 요구(노동부)
 -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력 확보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수립·시행하도록 조정
- 현행 관계부처가 시행중인 사업내용을 존중하여 사업주체를 변경(노동부)
 -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수급 원활화(제8조)의 사업주체를 “중소기업청장”에서 “정부”로 수정
- 고용보험법 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수정(노동부)
-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사항 추가(중기청)

□ 협의·조정 추진경위

- 입법예고 예정인 특별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7.1) 과정에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추진 지연(노동부, 복지부 등)
- “국정현안조정회의(총리주재)”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관계 부처간 협의·조정을 지시(7.23)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회의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대부분 합의(7.24)

□ 조정결과

- “국정현안 조정회의(총리주재)”에서 정부안을 확정(7.25)
- 기존 제출된 의원입법안(7.16)을 정부안으로 대체하여 입법 추진하여 국회통과(8.29)

18. 분당선 관련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 과제 개요

- 분당선(수서~왕십리)건설시 개포1·2역사가 추가됨에 따른 역사건립 비용분담관련 분쟁
 - '94.2 사업계획확정시에는 개포지역에 1개역만 설치기로 하였으며 당사자간 사업비 분담비율을 협약
 - ※ 협약비율 : 철도청 22.77%, 서울시 26.48%, 토공 50.75%
 - '96.3 철도청이 교통영향평가결과(개포2역)와 강남구민원(개포1역)으로 개포지역에 2개역 추가 신설 확정
 - 2개 추가 신설역에 대해 '96.1월부터 '02.9월까지 관계기간간 사업비 분담을 협의하였으나(14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02.10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 행정협의조정위에서도 실무조정을 하였으나 입장차가 커서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 조정요청

□ 이견내용

<철도청>

- 민원해소 차원에서 설치한 역은 수익자가 전액부담하여야 하므로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함

<서울시>

- 서울시와 협의없이 강남구와 철도청이 주민요구를 들어 사업을 시행한 것이므로 철도청이 사업비 부담해야 함. 다만 협약비율만큼의 분담금은 납부가능

<한국토지공사>

- 토지공사와 전혀 협의없이 역이 신설되었으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서울시가 전액부담

□ 협의·조정 추진 경위 및 조정결과

- 이견조정을 위한 행정협의조정위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은 각부처 차관급) 개최('03.4.24)
 - 개포2역은 당초 사업비 분담비율대로, 개포1역은 정부(철도청, 토지공사)와 자치단체(서울시, 강남구)가 각 50%를 부담하되, 50%내에서의 구체적인 비율은 자체 기관간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조정

※ 그후 국가의 50%부분은 철도청과 토지공사가 각각 25%씩 부담기로 하였으나 서울시와 강남구간 자체조정은 실패하여 본위원회에 상정

- 본위원회(6.4, 위원장 : 우병규)개최 결과
 - 개포1역 부담은 실무위원회 잠정합의대로 정부와 자치단체간 50%씩 부담토록 하되,
 - 자치단체 부담비율과 부담할 의사가 있는 비율(33.33%)의 차액인 초과부담분(16.67%)에 대해서는 그 1/2에 상당하는 금액(46억원)을 기획예산처가 서울시에 별도 사업예산으로 지원기로 함

※ 16.67%에 대한 실제부담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지게되나 정부지원을 별도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어 향후민원에 의한 추가 사업비부담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50%이상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게됨

-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기본틀이 마련됨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최종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음.

- 기관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

* '03.12월 현재 개포1역사 건설작업이 재개되었으며 내년 6월중 개통 예정

19. 건강가정육성기본법 및 평등가족기본법 제정 관련 가족업무 소관 검토

□ 과제개요 및 조정배경

- 최근 이혼·별거 등 가정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 복지부에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 여성부는 가족관련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없다고 판단하여 ‘평등가족기본법’을 제정 추진

□ 이견내용

< 보건복지부 입장 >

- 정부조직법 및 복지부직제에 “가족제도 전반과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
- 업무의 유기적·종합적 특성 때문에 가족관련정책은 보건서비스와 병행되어야 하며 복지정책과 밀착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여성부 입장 >

- 각 부처에 산재한 가족정책을 종합·총괄하고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혼, 별거, 가출 등 가족해체 등을 여성정책적 관점에서 적극 대응

□ 협의·조정 추진경위

- 관계부처 국장회의(‘03.8.14 복지심의회관 주재)
- 제1차 여성정책조정회의(‘03.9.24 국무총리 주재)

□ 조정결과

- 가족업무이관문제는 정부혁신위원회의 부처간 업무조정 검토에 의함
- 복지부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을 종합적인 가족정책측면에서 추진하고, 여성부는 ‘평등가족기본법’을 양성평등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복지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함
- 건강가정기본법안 국회통과(‘03.12.29)

20. 근로시간단축(주5일근무)실시관련

□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로 삶의 질이 낮고, 생산성 제고에도 한계

< 2001년도 OECD 주요국 연간근로시간 >

한 국	호 주	체 코	스페인	독 일	일 본	스웨덴	영 국	미 국
2,447	1,837	2,000	1,816	1,467	1,836	1,603	1,711	1,821

※ '02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410시간, 주당 근로시간은 46.2시간(10인 이상)

- 월차, 유급생리휴가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휴일·휴가제 존속

⇒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협상 결렬('02.7)에 따라 정부안 마련

□ 주요쟁점 및 조정추진경위

- 임금보전문제, 초과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연차휴가 일수가산기준, 주휴일 유·무급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이견
 - 산자부 :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
 - 노동부 : 노사정위원회 협상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필요
- 관계부처 실무회의 및 관계장관 간담회 등을 거쳐 정부 입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02.10)
 - '02.8.17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 '02.8.23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02.9.4, 9.5, 10.8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 개최
 - '03.9.1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후속대책기본방향 발표

□ 조정 결과

-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03.8.29)
 - 국무조정실 기획단(단장:사회수석조정관) 및 노동부 등 6개 부처에 T/F 구성, 주5일 근무제 후속대책 수립·추진

2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 추진 배경

- 정부는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02.10.18 「공무원조합의설립 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행자부에서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노동부가 주관하여 교원노조 수준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마련토록 결정('03.3.19)

□ 주요쟁점 및 이견

- 4.26, 5.16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조정회의를 통해 정부입법방안 논의
 - 행 자 부 : 행자부장관이 정부측 당사자가 되어야 함
 - 중앙인사위 : 중앙인사위원장이 정부측 당사자가 되어야 함
 - 노 동 부 : 기 제출된 정부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입법안 제출
-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 및 상급노동단체 가입문제에 대한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10.11, 10.18)에서 이견 조정
 - 법무부 : 전국단위 노조 설립 및 상급노동단체 가입 금지
 - 노동부 : 전국단위 노조 설립 및 상급노동단체 가입 허용
 - ※ 공무원단체 및 일선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입법 추진

□ 조정결과

- 노동부 주관으로 입법추진토록 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안 마련
 - ▲노동조합 명칭 사용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법령·예산 관련 단체협약의 효력 제한 ▲가입범위 : 지휘·감독, 관리·운영, 질서유지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6급이하 ▲정치활동 금지 ▲교섭주체 : 행자부장관 및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장관 참여

22.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 과제 개요

- 의원입법으로 제정 추진중인 “환경교육진흥법(안)”의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환경교육진흥기금설치 등에 대해 관계부처의 이견이 있으므로 사전협의 및 조정 필요

□ 이견내용

- 국무총리산하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는 위원회의 기능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산하에 설치(국무조정실)
- 각급학교의 환경교육 실시 의무화 및 교사자격 취득시 환경교과 이수 의무화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타교과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수용 곤란(교육부)
- 환경교육진흥기금의 설치는 정부의 기금축소 및 정비방침에 배치되며 자체수입이 없으므로 설치 반대(기획예산처)

□ 협의·조정 추진경위

-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개최(교육문화심의관 주재, '03.8.19)

□ 조정결과

- “환경교육진흥위원회”는 환경부장관산하에 설치
- 각급학교의 환경교육 의무화는 “학교 교육과정에 환경에 관한 내용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조정
- 교사자격 취득시 환경교과 이수 의무화는 “교원의 자격·직무 연수시 환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조정
- “환경교육진흥기금” 설치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삭제

23.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 과제 개요

- 스팸메일 규제강화를 위한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02.12.18)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 조정

◇ 시행령(안) 중 주요내용

-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별표로 정함(제23조의2 제2항)
- ② 광고시 준수할 제목란과 본문란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정함(제23조의2 관련 별표)
- 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게 수신거부용 무료전화서비스 제공 의무화함(제23조의3)

□ 부처간 이견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

- 스팸규제 업무가 공정위 소관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정통부 소관의 정보통신망법의 공통된 사항임을 상호 인정하고
 - 시행령(안)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공정위 소관의 관련 법령에서 시행령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해야함

< 정보통신부 >

-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보호 문제 이전에 On-Line상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 관련규제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정통부의 고유업무이며, 시행령(안)은 스팸메일 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임

□ 조정결과

- 산업심의관이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 및 공정위 전자거래보호과장 으로부터 각각 의견을 보고 받은 후('03. 6. 9일 및 6.16일)
 - 국조실이 제안한 조정안에 대해 양부처가 수용·합의함(7. 7일)
- ※ 조정합의안 : 시행령(안)에 대해 공정위가 원안수용하되 제23조의2 관련 별표의 비고란에 별표에서 정한 것 외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24. 수도권대학 신설 관련

□ 과제개요

-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4년제 대학 신설 허용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 ※ 현재 접경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 신설은 수도권계획 관련 법령에서 허용치 않고 있음 (수도권내 이전은 가능)

□ 부처간 이견내용

< 건교부, 경기도 >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접경지역의 대학설립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교육부 >

- 시행령 개정은 지역균형발전 구상과 배치되며 지방대학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가함

□ 조정 추진경위

- 시행령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 '03.5.13~6.13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이견조정 : '03.9.3

□ 조정결과

- 시행령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단 보류하되,
 - 경기도는 현 제도 하에서 접경지역 내 구체적인 대학유치 계획(수도권소재 대학이전)을 수립하고 교육부, 건교부는 이를 적극 지원

25. 판교신도시내 학원단지 조성

□ 과제개요

- 판교신도시내 우수학교(자립형사립고·특목고 등) 유치와 함께 학원 집적 단지를 조성하여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 도모

□ 부처간 이견내용

< 재경부, 건교부 >

- 4대 신도시(판교·화성·김포·파주)의 성공적 개발과 강남의 주택수요 대체를 위해서는 학원 집적단지 조성 필요
 - 교통·공원·편의시설과 함께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강남권에 집중된 교육기능을 분산시켜야 함

< 교육부 >

- 학원단지 계획은 사교육을 조장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반 정책수행을 어렵게 함
 - 학원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

□ 조정 추진경위

- '03.9.9 판교신도시내 교육단지(학원단지 포함)조성계획 발표
- '03.9.22 교육부는 국정감사시 학원단지조성에 반대 입장 표명
- '03.9.27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방침 확정

□ 조정결과

- 특수목적고 등 우수학교 유치와 교육시설구역 조성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학원집적단지」는 추진하지 않기로 함

26. 의장법 개정

□ 과제개요

- 현행 의장법상 “의장”이라는 용어의 문제점
 - “의장”이라는 용어는 오래 기간 사용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일반인에게 친숙한 용어인 “디자인”으로 용어변경 추진

□ 이견내용

- 의장법의 명칭은 “디자인법”, 의장은 “디자인”으로 변경(특허청)
 - 의장을 대신하는 용어로 일반국민 모두가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디자인으로 할 것을 요구
- 의장법의 명칭은 “산업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은 “산업디자인”으로 할 것을 요구(문화관광부)
 - 의장을 디자인으로 변경시 모든 디자인보호의 기본법으로 오해케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보호를 의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정책의지와 충돌함.
- 산자부(“산업디자인진흥법” 소관부처)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법명칭 수정 요구

□ 협의·조정 추진경위

- 국조실 주관(산업심의관 주재), 문화부·특허청·법제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처간 입장파악 및 이견사항 조정('03.9.3)

□ 조정결과

- 의장법의 명칭은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
- 현행법상의 “의장”이라는 용어는 “디자인”으로 개정

27.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관련

□ 과제개요 및 조정배경

-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급증하고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서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한계가 있음
 - ※ 기금규모 : '03.6월 101조원 → '05년 137조원 → '10년 242조원 → '20년 497조원
- 국민 불신 해소 및 기금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한 전문성·독립성 강화 필요
 - ※ '03.7월 현재 104조원 적립금 중 운용수익 35조원으로 연평균 8.89%수익 실현
 - ※ '00년이후 3년 연속 자산운용평가 1위(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평가)
- 국민연금 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위원장 : 정운찬 교수, '01.11~'02.4)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제시 후 복지부에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03.3~6) 및 입법예고('03.8.19)

□ 이견 내용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되, 소속에 이견
 - < 보건복지부 >
 - 복지부 소속 : 연금책임에 일관성을 유지
 -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
 - 총리실 소속 :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운용 필요

□ 협의·조정 추진 경위

- 국무조정실 조정회의(경제조정관 주재) 논의(6.14, 7.7, 7.24, 7.29, 7.31, 8.5)
- 국정현안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논의(9.1, 9.27, 10.4, 10.11)

□ 조정결과

- 연금정책협의회(비상설)를 총리실에 두고, 기금운용위원회(상설, 사무국 설치)를 복지부에 두어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28. 백두대간보전법 제정 관련 조정

□ 과제개요

- 법안의 내용은 유사하나 법령상 권한을 각각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환노위(환경부, '03.4)와 농해위(산림청, '02.7)에 의원입법으로 각각 발의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백두대간보전에 관한 대통령지시가 있었음('03.4)

□ 이견내용

- 법 제정 소관상임위(주관부처)와 관련, 환경부와 산림청은 각각 환노위와 농해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되기를 주장
 - 환경부장관(산림청장)이 10년마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수립
 - 환경부장관(산림청장)이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 등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환노위안은 보호지역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차등화, 농해위안은 구역구분 없이 단일화)

□ 협의·조정 추진경위

- 환경부·산림청간 역할분담 조정('03.5) 및 정부합의안 마련('03.10)
 - 법률은 환경부·농림부(산림청)공동소관으로 함
 - 보호기본계획 수립 및 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 등 정책적인 사항은 환경부, 실질적인 계획수립 및 지역지정 등 집행적인 사항은 산림청이 담당하되, 시행과정에서 상호 협의하도록 함
 - 법안의 명칭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로 하고 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2분하여 지정

□ 조정결과

- 법사위에서 금년내 법률 제정을 목표로 직접 정부합의안을 반영, 수정토록 노력하였으나 농해위의 반대로 각 상임위에 반려(11.19)
 - 농해위가 환노위의 양해하에 정부 합의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번안의결(11.20)하여 법사위에 다시 제출(11.24), 본회의 통과(12.9) 및 공포('03.12.31)

29. 집회·시위시 확성기 등 소음규제

□ 과제개요

- 집회·시위시 확성기 등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 및 민원 증가
- 관련 법령상 소음규제기준 및 처벌기준 미비로 단속 불가
⇒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이견내용

<환경부>

- 집회·시위시 확성기소음에 관한 사항은 집회·시위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

<경찰청>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집회의 권리를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회·시위시 확성기소음에 관한 사항은 소음에 관한 일반법인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

□ 협의·조정 추진경위

- 2차에 걸친 조정회의('03. 7. 8, 9. 26)를 통해 조정완료

□ 조정결과('03. 9. 26)

- 소음·진동규제법에 집회·시위시 확성기소음 규제근거를 설정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소음규제기준 준수 의무 및 위반시 처벌규정 설치

※ 11. 3(목)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집회·시위시 확산기소음 규제 근거를 설치하는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심사 ⇒ 부결

* 한나라당 안상수의원 발의 개정(안) 활용

※ 법제처, 경찰청 등과 협조 집시법에 집회·시위시 소음규제근거, 소음규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조항을 포함하는 집시법 개정(안) 마련 ⇒ 11. 19(수) 행자위 의결, 본회의 원안가결 (12.29), '04.1.29 공포예정

* 한나라당 안상수의원 등(4명) 발의 개정(안) 활용

30.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

□ 과제 개요

- 특별법 제정을 통해
 - 그 동안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온 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 개발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접근
 - 농촌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교육·의료 등 기초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개발을 촉진

□ 부처간 이견내용

- 농어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의 소관 문제가 쟁점
 - 농림부 : 농어촌에 대한 직불금 성격의 지원은 일반국민에 대한 특례인 점을 감안, 농림부 예산으로 편성·지원
 - 보건복지부 : 복지이원화를 사유로 농림부 예산편성에 반대

□ 협의·조정 추진경위

- 특별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8.1)하고 주요 의견을 제출한 재경부, 행자부, 여성부, 복지부와 협의(8.21)
 - 연금보험료 지원 등은 복지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함
- 농특위에서 조정을 추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총리실에서 조정착수(6.27일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1급회의)
 - 농림부는 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특별법을, 보건복지부는 의료 분야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입법방향 정리
 - * 다만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을 농림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농림부 주장은 미합의(복지부 반대)

-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8.14), 고위당정회의(8.18), 경제정책 조정회의(8.25), 관계장관회의(9.1)등을 통해 농특세 사업의 통합관리 등 부처간 이견을 조정
 - 농어민 직접지원 성격의 사업을 농림부로 이관하는 문제 집중 논의
 -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는 찬성, 보건복지부는 반대
- 경제조정관 주재 농민단체 면담(9.4),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법안 조정 실무협의회(10.7, 10.14)를 거쳐 법안 확정

□ 조정결과

- 농림부 법안에 농어민 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포함하고,
 - 건강보험료와 영유아보육비 지원예산은 농림부에, 연금보험료 지원예산은 복지부에 편성하였음
- 법안은 법제처 심사(9.25), 국무회의(10.28)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 농림위에 상정(11.17)되어 계류 중

31. 재외동포법령 개정

□ 과제개요

- 現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
 - 외국국적동포의 정의를 과적국적주의로 함으로써 과거에 국적회복의 기회가 없었던 중국內 조선족과 CIS 지역 거주동포 등이 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동포간 차별이라는 지적

□ 이견내용

- '01.11.29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03.12.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조항 무효화
-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 중국 및 CIS 동포를 포함하는 경우,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발생 및 중국동포의 대거유입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에 부정적 효과 발생 우려

□ 조정결과

- 정부는 학계·재외동포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무부의 개정안을 확정
 - 재외동포법·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중국 등의 동포를 차별하는 규정을 폐지하되, 국내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중국 등 불법체류 다발국가 거주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발급을 제한
-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9.23),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11.8), 국무회의(11.11), 공포(11.20) 완료

32. 공적연금간 연계방안 마련

□ 과제개요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제도가 없어 양 제도간 이동시 연금수급권 일실 또는 연금액 축소 문제 발생
 - ※ 철도공사화과정에서 철도노조의 20년미만 철도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보장 요구 및 공사화 거부로 철도공사법 국회 의결 보류('03.6)
- 이에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주재:국무총리, '03.6.27)에서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결정

□ 이견 내용

- 철도공사화시('05.1.1. 예정) 20년 미만 재직 철도공무원의 공무원 연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이견

< 건교부 · 기획예산처 >

- 20년 한도로 공무원연금 특례가입 허용 주장(한정가입방식)

< 행자부 >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주장(비대칭소급적용방식)

□ 협의 · 조정 추진 경위

- 철도공무원연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에 민·관합동으로 설치된 공적연금연계합동기획단에서 검토(8.28, 10.2, 10.16)
- 동 검토결과를 토대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10.18, 10.24, 10.31)하여 한정가입 허용결정
 -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의 연계방안은 '04년말까지 마련

□ 조정결과

- '03.10.30 현재 재직 철도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수급자격 발생시까지 한정가입 허용

33.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재원분담

□ 과제개요

- 여수시가 사업시행자로 추진하고 있는 여수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전에 대한 간접보상비(360억원) 조달방안

※ '01.11 관계차관 회의에서 간접보상비(360억원)는 입주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였으나 감사원은 산자부 감사시 업체 부담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대안마련을 요구

□ 부처간 이견내용

< 산자부, 건교부, 전라남도, 여수시 >

- 국가산업단지라는 점을 감안 부족재원은 전액 국고지원 필요

< 기획예산처 >

- 산업단지 마을移轉에 국고를 지원한 전례가 없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하며 지자체 조달(교부세 증액포함)이 바람직

< 행자부 >

- 교부세 지원 불가(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필요함)

□ 조정 추진경위 및 조정 결과

- '03. 9.25 재원분담 조정건의 (산자부,여수시 → 국무조정실)
- '03.10.31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에서 분담방침 확정
 - '02, '03년도 집행분(14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확보(행정자치부)
 - 120억원은 입주업체의 자발적 참여로 확보(산업자원부, 여수시)
 - 잔여 비용(95억원)은 '05년도부터 건교부 일반예산으로 확보

3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 도입

□ 과제 개요

- 최근 마약류사범의 지속적인 증가와 외국산 신종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근절 종합대책’(‘02.4)을 수립·추진중
 - 동대책에서 근본적인 마약류 수요감축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보호를 조건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기로 하였으나 추진 지연

□ 부처간 이견내용

< 법무부 >

- 동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보호관찰 인력과 치료보호시설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며, 현행 보호관찰법에 의한 수강명령제도로도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복지부·식약청 >

- 현재 3% 이하에 머물고 있는 마약류사범의 치료율 제고를 통한 마약수요의 근원적 축소를 위해서는 동 제도 도입이 필요

□ 협의·조정 추진 경위

- 5.17 마약류대책추진실무협의회(의장:사회수석화조정관)에서
 - 법무부에서 연구한 치료조건부 집행유예제도 신설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 도입방안 확정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동치료보호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방안 검토
- 6.21 마약류대책협의회(의장: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위의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나, 법무부에서 신설방안 마련을 지연
- 11. 28 마약류대책추진실무협의회(의장:사회문화조정관)를 개최하여 조정 완료

□ 조정결과

- 법무부에서 제도도입 방안을 마련,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04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토록 조정

35. 군 기능인력 양성 방안

□ 과제 개요

- '02.5 당실 주관으로 비상시 국가기간산업 정상화를 위한 군인력 양성계획을 수립
 - 철도, 지하철, 발전, 상수도, 가스, 항만 등 총 12개 분야 10,860명 양성 계획(양성관리/자원관리/단순지원으로 구분, 관리)
- 그러나 화물연대 집단행동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수단 부족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인력 양성분야 및 지원인력 확대방안 강구 필요

□ 이견 내용

- 검토 필요사항
 - 기존 12개 분야중 지원인력의 확대 또는 양성기간의 연장 등 보완 필요성 검토
 - 기존 12개 분야 이외의 산업분야중 불법파업 등에 대비하여 군 인력 양성이 추가로 필요한 분야 발굴
 - 군 인력 양성을 위한 효율적 교육훈련 및 예산지원 문제 등

□ 협의·조정 추진 경위

- '03.7.29~8.6 쏠부·처·청을 대상으로 소관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분야 및 군 소요인력 규모 조사(18개분야 19,910명)
- '03.8.29, 노동여성심의관(주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회의 개최
⇒ 금년 추가요청 인력 : 4개분야 9,050명

□ 조정결과

- 불법파업 등 비상시 국가기간산업 정상운명을 위한 군기능인력 지원방안 확정(11.11, 국무총리보고)
 - 현행12개분야10,860명⇒14개분야 17,160명지원(6,300명 증)

36.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지역법 통합

□ 과제 개요

-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허용 업종을 물류업, 제조업, 수출입목적의 도매업 등으로 확대

□ 이견 내용

- 주관부처 의견(재경부)
 -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관세자유지역법 개정
- 관계부처 의견
 - (산자부)자유무역지역법과의 중복을 이유로 관세자유지역법 개정 반대
 - (건교부, 해수부)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관세자유지역법 개정

□ 협의·조정 추진 경위

- 건교부, 해수부, 관련 업계의 건의를 받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관세자유지역제도 개선을 추진

□ 조정 결과

- 재경부·산자부 공동입법으로 통합법안(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관세자유지역법 폐지)을 마련

37. 美 다코다(차량) 덮개 허용 문제

□ 과제 개요

- 美측에서 제기한 다코다(DAKOTA)의 화물칸에 덮개를 씌우는 구조변경 승인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

□ 이견 내용

- 주관부처의 의견
 - 하드커버 형태의 덮개설치를 허용하되 조세회피방지규정 신설
- 관계부처/집단의 의견
 - (건교부) 다코다의 화물칸을 하드커버로 유개화하는 것은 허용 불가 다만, 소프트커버의 유개화는 허용 가능
 - (외통부) 한·미간 통상마찰 방지를 위해 하드커버 형태의 덮개설치를 허용

□ 협의·조정 추진경위

- 실무회의(2회)를 개최하여 건교부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개화 제한 규정이 국제적인 기준(WCO기준 등)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설득

□ 조정결과

- 건교부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다코다의 화물칸 유개화를 허용하기로 결정

38. 민간투자제도 개선

□ 과제 개요

- SOC 민자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이견 내용

- 주관부처 의견(재경부)
 - 재무투자자에 의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민자제도를 대폭 개선
- 관계부처 의견(예산처)
 - 사업시행자 선정시 재무투자자 배점상향 등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제도 개선 필요

□ 협의·조정 추진 경위

-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SOC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조정 결과

- 예산처가 주장하는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여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법 제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
 - 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 자기자본 비율 완화(25%→20%)
 -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적 투자자 출자비중」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1%→5%)
 - 입찰 경쟁이 용이하도록 사업물량을 적정규모로 분할하여 단위 사업화 하고, 대규모 사업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
 - 대규모사업(총사업비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이 총사업비 중 공사비 단가를 사전심사

39. DDA 교육서비스 양허안 제출

□ 과제개요

- '03.3월말 시한인 DDA 서비스 분야 1차 양허안 제출에 교육 서비스 양허안 포함 여부

□ 이견 내용

- 주관부처의 의견
 - 대학·성인교육분야는 이미 개방되어 있으므로 이에 한정하여 양허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 관계부처/집단의 의견
 - 교육부와 관련단체는 교육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일단 양허안에서 교육서비스를 제외하자는 의견
 - 재경부 등 대다수 관계부처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장 개방의 필요성, 기개방분야이므로 추가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양허안 제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협의·조정 추진경위

- '03.3.21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추후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통상교섭본부장간 별도협의를 통해 최종결정기로 합의

□ 조정결과

- 대학·성인 교육서비스 분야 양허안 제출에 합의

40.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 과제개요

- '03.2.15 서명한 한·칠레 FTA 협정의 국회동의를 얻기 위해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

□ 이견 내용

- 주관부처의 의견
 - FTA 협정의 조속한 발효, 대외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조속한 비준안 제출이 필요
- 관계부처/집단의 의견
 - 재경부 등 관계부처는 조속한 비준안 제출 필요성 인식
 - 다만, 농림부는 국회비준안 제출은 이행특별법 제출과 연계하여 시기·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예산처는 이행기금 조성재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 협의·조정 추진경위

- 6.19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준안의 조속제출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차관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키로 결정
- 6.21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비준안 제출시기·방법 논의

□ 조정결과

- 칠레측 제출시기를 고려하여 7월초 비준안을 제출키로 합의
 - 비준안 국회 제출('03.7.8)
- 비준안 통외통위 통과('03.12.26)

41. 이공계 해외유학 지원사업 인원 확대

□ 과제 개요

○ 주요 내용

- 세계적 수준의 인재양성과 Global R&D Network 구축을 위해서 이공계 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고급인력 양성정책을 추진
- 석박사학위 취득인원과 해외공동연구 인원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각각 300명씩 지원하기로 합의

< 사업별 지원규모 >

세부사업	사업규모(년간)	소요예산
· 박사후 해외연수	· 400명 내외	· 120억원(2년이내 지원) - 400명 × 2.5만불 이내
· 해외 석·박사 학위 취득	· 300명 내외	· 108억원(2년이내 지원) - 300명 × 3만불 이내
· 해외공동연구	· 300명 내외	· 62억원(6월~1년이내 지원) - 300명 × 2.5만불 이내
계	· 1,000명 내외	· 290억원

□ 이견 내용

○ 주관부처의 의견 : 과학기술부

-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 미달사태 및 연구인력 공동화 우려로 해외 석·박사학위 취득 지원인원의 축소를 주장(300명→200명)

* 박사후 해외연수 및 해외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확대지원 요망

○ 관계부처/집단의 의견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 축소에 반대
- 교육인적자원부 : 찬성

□ 협의·조정 추진경위

- 2003년 3월 25일 경제차관간담회시 축소안과 유지안에 대한 검토 결과 2003년에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

□ 조정결과

- '03에는 석·박사과정과 공동연구지원과정의 인원(각각 300명)을 이미 발표된 기존안대로 유지하되, 향후 수요를 파악해 해외 현지 연구지원사업 전체 인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
- '03년도 지원실적
 - 박사후 해외연수생 454명 선발
 - 해외 석박사 학위취득 지원 274명 : 당초 300명을 선발하였으나, 관련기관 중복 수혜자(26명)로 274명 선발
 - 해외공동연구 209명 선발 : 박사과정 99명, 석사과정 62명, 학부과정 27명, 대학부설연구소 등 연구소 21명

42.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 제정

□ 과제 개요

-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 제정에 대한 부처간 이견

□ 이견 내용

-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에 대해
 - 교육부 : 5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한 자
 - 재경부, 산자부 : 2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한 자
- *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으나 관계부처 국장 회의에서 기합의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외국정부의 추천을 받은 내국법인으로 하기로 함

□ 협의 · 조정 추진상황

- 경제장관간담회(02.6, 02.7)에서 논의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의 제정을 위해 그간 공청회('00.7)·간담회('02.7, '02.9) 및 3차에 걸친 입법 예고('00.8, '01.8, '03.1) 등을 추진 해옴

□ 조정결과

-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금년 하반기 입법 재추진 방침 결정 (03.7.10)
 -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연내제정과 법안 주요내용에 대해 합의

□ 기타사항

- 현재 주관부처인 교육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교조 등의 반대로 인해 구체적인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지 못함. 내년중 사회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입법 추진 방침

43. 무방류 시스템 도입

□ 과제 개요

- 무방류시스템과 같이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최고수준의 기술이 갖춰진 경우에는 환경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
 - * 비메모리 반도체업체인 동부전자(충북음성)는 첨단 기술 투자를 위해 '01년중 구리배선 공정의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충북음성은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구역으로 구리배선 투자를 금지
 - 同 업체는 첨단 폐수처리 시설(무방류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나, 현행 법체계 내에 관련규정이 없어 허용 곤란
 - '01.6 동부전자의 애로 제기후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회의 등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

□ 이견 내용

- 주관부처의 의견 : 환경부
 - 동부전자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충북 음성군 감곡면)은 수질 환경보전법(제10조제6항) 및 환경부 告示(제1999-163호)에 의해 구리폐수를 유발하는 시설설치가 금지
- 관계부처/집단의 의견 : 산자부
 - 무방류시스템을 갖춘 경우 입지를 허용
 - 다만, 수질보전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수계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 2차로 제한지역에 편입된 지역에 입주해 있던 업체로 제한 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구리함유 폐수로 한정

□ 조정 결과

- 친환경적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03년중 수질환경보전법 등 개정)
 - 무방류 폐수처리시스템 등 최고 수준의 환경기술이 갖춰진 경우 환경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폐수를 처리하여 전량 재사용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방지
 - 관련 법령 미비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부 고시를 개정(’03.11)
 - * 동부전자는 환경부로부터 무방류 폐수처리시스템 설치 허가를 받아 ’04.5월까지 6,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예정

44.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양성자가속기 사업 연계 문제

□ 과제 개요

- 원전수거물관리시설부지 확보사업과 양성자가속기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연계 추진

□ 이견 내용

- 주관부처의 의견
 - 과학기술부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부신뢰성 차원에서 기존 신청 기관에 대한 평가실시 후 계획대로 수행 (분리 추진)
- 관계부처의 의견
 - 산업자원부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주민 선호 시설인 양성자가속기사업과 연계 추진

□ 조정 결과

-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 확보사업과 연계 확정
 -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확보사업과 양성자가속기사업 연계 추진 확정('03. 4. 15, 국무회의)
 - 연계추진공고('03. 5. 1, 주요일간지 공고)
 - 전북 부안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최종부지 선정 통보('03.7.25)

45. 스포츠·여가산업 규제 합리화

□ 과제 개요

- 골프장·스키장 등 레저스포츠분야의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합리화
 - 시·도 기준보다 엄격한 시·군·구별 골프장 총량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골프장 부지면적·골프장내 숙박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제한·엄격한 수질기준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 *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골프장의입지 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등

□ 이견 내용

- 주관부처의 의견
 - 재정부·문광부는 기초단체의 골프장 설립에 대해 과잉규제하고 있고, 골프장에 대하여 부지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체시법시행령 제9조)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골프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
- 관계부처/집단의 의견
 - 환경부는 골프장 규모 확대에 따른 산림훼손이 우려되어 원칙적으로 반대이나, 골프장에 대하여 원형지 보전율을 높일 경우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환경단체 등 반대)

□ 조정 결과('03.3.27 경제정책조정회의)

- 시·군·구별 골프장 총량 제한 규제를 완화
 - * ① 골프장 설립시 시·도 기준(임야면적 5%이하)보다 엄격한 시·군·구별 골프장 면적 총량 규제(3%이하) 폐지
(‘03.10, 문광부 ‘골프장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개정 완료)
 - ② 총면적 산정時 한계농지·간척지·쓰레기매립장 등은 임야면적 합산에서 제외(‘03.10, 문광부 ‘골프장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개정 완료)

46. 경차보급 활성화

□ 과제 개요

- 과제의 개략적인 내용
 - 에너지·환경·교통 측면에서 유용한 경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 강구

□ 이견 내용

- 주관부처의 의견 : 산자부·건교부
 - 경차에 대한 지원시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 관계부처/집단의 의견 : 행자부·서울시·업계
 - 행자부·서울시는 경차 우대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견지
 - 경차규격 확대에 대해서 일부 자동차 업체(GM 대우)가 충분한 유예기간(법령 개정후 4~5년)이 필요하다는 입장 개진

□ 조정 결과

- ① 경차 구입·보유·운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 (건교·행자부)
 - 등록세·취득세 등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작업 진행(11.19일 국회 행자위 통과, 12.9 본회의 통과)
 - 도시철도공채 매입 면제(4.30일 도시철도법 개정), 공영주차료 50% 감면(7.29일 주차장법 개정), 혼잡통행료 50% 감면(7.25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등의 조치 완료
- ② 경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다양한 新車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경차규격을 유럽 수준으로 확대 (건교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완료 (11.22일, '08년 시행)

* 규격 확대내용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 → (개정)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5m, 너비 1.5m → 길이 3.6m, 너비 1.6m

47. 수도권 외국인투자기업 입지규제 개선 (LG필립스 파주공장)

□ 과제 개요

- 외국인투자유치(LG필립스)를 위한 수도권 입지규제 개선
 - 외국인투자기업(외투비율50%이상)의 25개 첨단업종 공장은 '03.12.31까지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신청을 한 경우 성장관리권역내 신증설 허용
 - LG필립스는 '03.12.31까지 입주계약체결 신청이 불가능하여 제도 개선 필요

□ 이견 내용

- 산자부 의견
 - 외국인투자유치*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
 - * LG필립스 LCD공장 투자 규모 : 약 100억불
- 건교부 의견
 -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 협의·조정 추진 경위

- '03.3.20 재경부 차관보 주재 관계부처(건교부·산자부) 국장회의 개최
- '03.3.27 경제정책조정회의('새정부경제운용방향')
 - 허용방침을 최종 결정하고, 법령(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확정

□ 조정 결과

- 산업집적활성화법시행령 개정('03.7.1)
 - 외국인투자유치 목적도 달성하는 동시에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
 - * '03.12.31까지 외국인투자유치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에는 입지 허용
- '03.7.31 외국인투자유치목적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하고, '04.3 착공 예정

48.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설립

□ 과제 개요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03.1)으로 관리지역내 공장 면적 기준이 변경* 됨에 따라
 - * 관리지역(舊준농림지역)내 공장허용 기준 : 종전 3만㎡ 미만 → 1만㎡ 이상
- '02년 말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못하여 공장건축을 못하게 된 사례(전국 약 2천건)에 대해 구제 추진

□ 이견 내용

- 산자부 의견
 - 투자활성화 및 신뢰보호를 위해 구제 필요
- 건교부 의견
 -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구제 반대

□ 협의·조정 추진경위 및 결과

- '03.3.20 재정부 차관보 주재 관계부처(건교부·산자부) 국장회의 개최
- '03.3.27 경제정책조정회의('새정부경제운용방향')
 - 토지형질 변경 등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 투기협약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구제키로 합의
- '03.5.30 관계부처(건교부·산자부) 실무회의 개최
 - 향후 1년 이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 건축을 착공하는 경우에 한해 구제키로 합의(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49. 미국의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 대책

□ 과제개요

- 미 상무부의 반도체 상계관세(44.71%) 최종부과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 WTO 제소여부

□ 이견 내용

- 주관부처
 - 외교부는 곧바로 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ITC의 최종판정 이후 제소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산자부는 곧바로 WTO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관계부처/집단의 의견
 - 재경부 등 관계부처는 적극적 대응의지 표명과 경제적 실익차원에서 WTO 조기제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 국회는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

□ 협의·조정 추진경위

- 미 상무부의 예비판정단계에서부터 우리측 대응방안을 논의 (4.7, 5.6 관계장관회의 개최)
- 6.19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판정에 따른 우리측 대응방안 논의

□ 조정결과

- WTO에 조기제소하였으며('03.6.30), ITC의 최종판정결과를 포함하여 추가 제소('03.8.18)

50.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

□ 과제개요

- 정통부에서 추진중인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안에 대해 관련기관인 산자부, 공정위 및 특허청에서 반대가 지속됨에 따라 조정 필요

□ 이견 내용

○ 주관부처 의견(정통부)

- 인터넷주소 자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인터넷주소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해 법제정 불가피

○ 관계부처 의견

- 산자부 : 인터넷 주소관리체계에서 민간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기관인 인터넷진흥원 설립 반대
- 특허청 :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및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금지규정은 상표법 등과 중복되므로 삭제
- 공정위 : 인터넷주소관리 시책 수립시 공정위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조항 신설

□ 협의·조정 추진경위 및 조정 결과

- 재정부 정책조정심의관 주재로 제1차 관계부처(정통, 산자, 공정위, 특허청)회의 개최(03.1.23)
- 재정부 경제조정심의관 주재로 제2차 조정회의 개최(03.6.16) 하여 조정완료
 - 인터넷주소자원법에 포괄적으로 사이버스쿼팅 금지를 규정하고, 상표·상호·이름 등 표지에 관한 사이버스쿼팅 금지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
 - 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권 규정은 인주법에 일원화하여 규정하되,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상의 금지규정과 관련한 등록말소청구권은 상표법 제65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근거함을 명시

51.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과제 개요

-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강구

□ 이견 내용

- 주관부처(재정경제부)의 의견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해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는 공감
 - 다만, 조세의 형평성 및 중장기 세제개편방향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제지원
- 관계부처(해양수산부)의 의견
 - 해운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획기적이고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

□ 협의·조정 추진경위 및 조정 결과

- 조세의 형평성 및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조정 완료
 - 선박투자회사 법인세 감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해운사 차입자금 이자 손금인정 등 세제지원 반영

52. 인천공항 제2연육교 건설 관련

□ 과제 개요

- AMEC社(영국)는 인천공항과 송도를 잇는 제2연육교 건설사업을 제안('00, 약1조원)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후속 절차인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 관계 부처간 이견

□ 이견 내용

- 주관부처 의견(예산처)
 - 사업조건은 실시협약시 확정되어야 하며, 사업조건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변경불가
- 관계부처 의견(건교부)
 - 현단계에서는 사업조건을 모두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일단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기본설계 완료 후 사업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협약에 반영

□ 협의·조정 추진 경위

- 동 사업 차질시 이를 전제로 인천시와 Gale사(미국)간에 체결된 송도 신도시 127억불 투자유치에 악영향이 우려됨으로 재경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이견 조정

□ 조정 결과

- 협약 체결시 총사업비의 상한선을 두어 확정하고 추후 총사업비를 변경할수 있도록 협약에 반영하여 AMEC社(영국)와 실시협약 체결(03.6.12)

53. 중소기업 정책방향

□ 과제 개요

○ 과제의 개략적인 내용

- 중소기업 정책목표와 추진방식을 환경변화에 맞게 전환하고 기업유형별 차별화된 지원정책 수립·추진

□ 이견 내용

○ 주관부처의 의견 : 중기청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개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 관계부처/집단의 의견

- 여타 관계부처는 부처간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개편에 소극적으로 대처
- 중기협중앙회 등은 단체수의 계약제도의 급격한 축소·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 전달

□ 조정 결과

- 관계부처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 시책의 합리적 쇄신을 추구하기 위한 「중소기업정책 개편방안」을 마련·발표 (6.23일)

* 주요 개혁과제

- ① 중소기업 지원시책 평가제 및 일몰제 도입
-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 ③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 강구
- ④ 정책금융 지원시스템 개편
- ⑤ 기술 및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 ⑥ 수요연계 기술개발의 확대
- ⑦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 ⑧ 중소기업 보호제도 개편
- 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강화
- ⑩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효율적 개편

□ 후속 조치

- 중소기업정책 개편방안을 구체화·체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중장기 발전비전 및 육성전략」 마련
- 정책 개편과제에 대해서는 시행 가능한 분야부터 차질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독려

54. 벤처기업 M&A 활성화

□ 과제 개요

○ 과제의 개략적인 내용

-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영업양수도, 인수·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정비

□ 이견 내용

○ 주관부처의 의견 : 중기청

- M&A 관련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 관계부처/집단의 의견

- 재경부·금감위 등은 벤처기업과 상장기업간 M&A 확대에 의해 투자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를 감안해야 함을 지적
- 벤처기업협회 등은 부실 벤처기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M&A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

□ 조정 결과

① M&A 관련 저해요인의 제거 및 절차 간소화 (중기청)

-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12.20)

* 주요 개정내용

- ① M&A 대상을 벤처기업 이외에 상장·등록법인을 포함한 다른 법인의 주요 주주까지 확대
- ②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제도 도입
- ③ 공인평가기관에 의한 주식가치 평가를 법원의 현물출자 심사로 대체
- ④ 합병시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주주총회 이전으로 단일화
- ⑤ 소규모 영업양수도시 주주총회 절차 생략 허용

② 합병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재경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2.9)

* 주요 개정내용

- 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② 주식교환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후속 조치

- 벤처특별법 및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노력
- M&A 중개기능 강화, 관련 정보의 제공 확대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독려

55. 자연휴양림 제도 개선

□ 과제 개요

- 자연휴양림 지정조건 및 협의절차 완화, 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지역 확대(댐, 저수지 등)

□ 이견 내용

- 주관부처의 의견
 - 자연휴양림내 형질변경, 건축면적, 건물층수를 탄력적으로 적용
 - 휴양림 지정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협의절차 생략
 - 지정대상지역을 댐, 저수지 주변까지 확대
- 환경부 의견
 - 휴양림 지정규모를 세분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협의생략 곤란. 향후 환경정책기본법에 휴양림 지정을 명시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로 일원화
 - 댐, 저수지 주변의 일정지역은 재해방지 및 수질보전을 위해 제한 필요

□ 조정 결과

- '03.8.21일(목) 관계부처 조정회의(재경부 주관)시 조정 완료
- 자연휴양림 형질변경 등 면적의 탄력운영을 위해 규모별 차등화 기준안 마련
- 수질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에서 허용하되, 휴양림지역내 오수처리기준을 BOD 20mg/l에서 5~8mg/l로 조정

56.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 과제 개요

- DDA 협상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가의 부채를 경감,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부채 상환능력을 감안, 농가실정에 적합한 대책 수립

□ 이견 내용

- 주관부처의 의견
 - 농림부는 경영개선자금 및 상호금융자금의 금리인하 필요 입장
 - 기획예산처는 경영회생프로그램 활용, 타부문과의 형평성, 시장원리 등을 이유로 반대
- * 농민단체는 경영개선자금·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6.5%→3) 및 상호금융자금 기간연장(추가 5년)을 강하게 주장

□ 조정결과

- 정부는 경영개선자금·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는 농어업인 부채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03.10.28, 국무회의)

□ 후속 조치

- 상호금융자금, 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문제는 국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으로 한-칠레 FTA 비준과 더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 (국회에서의 논의)
- 금리인하·상환기간 연장은 농가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아니므로 마지막 부채대책이 되도록 정부노력 지속 필요

57. 고속철도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과제개요

○ 과제의 개략적인 내용

- '04.4월 개통예정인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부가가치세법 개정)

□ 이견 내용

○ 주관부처의 의견

- 고속철도는 운행시간, 요금 등을 감안시 항공기, 고속버스 등과의 형평상 과세하는 것이 타당

* 현행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면세 : 시내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 과세 :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 등

○ 관계부처/집단의 의견

- 고속철도 영업수지에 미치는 영향, 전산망 구축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과세를 유보(건설교통부)

□ 조정 결과

- 조정이 완료(9.23 국무회의)되어 과세키로 부가가치세법 개정(12.18)

58. 경제자유구역 추진관련 후속법령 정비

□ 과제 개요

-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외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후속법령 정비를 추진중이나 관계부처의 소극적 태도로 부진
 - 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8개) 감면
 - ②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정
 - ③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 이견 내용

(1) 부담금 감면

○ 재경부 의견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자에게 8개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

○ 관계부처 의견(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 * 감면대상 8개 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공유수면 잠사용료, 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조성비,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중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에 소극적
-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므로 개발사업자에게 감면하는 것은 곤란(환경부)

(2) 외국교육기관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정

○ 재경부 의견

- 외국인에게 대학설립을 허용하여 설치 유인을 확대하고, 내국인에 대한 입학제한 폐지

○ 교육부 의견

- 법률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 다만 외국교육기관은 비영리법인에 한정하되 대외송금은 허용

(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 관련

○ 재경부 의견

- 우수 의료기관 유치의 실효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 복지부 의견

- 외국인 전용병원만 설립 허용(외국 우수 병원의 유치보다는 국내 병원의 경쟁력 향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
- 외국인 전용병원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공공의료확충을 전제로 내국인 진료허용 검토 가능(복지부)

□ 협의·조정 추진 경위 및 조정 결과

○ 부담금 감면 합의를 위한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 개최(8.25)

- 7개 부담금(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생태계보전협력기금)에 대해서는 감면 추진
- 다만 환경개선부담금(환경부)의 경우 관계부처가 감면에 소극적

○ 부담금 감면 합의

- 경제자유구역법상 감면대상 부담금 중 환경개선부담금을 제외한 7개 부담금에 대해 2004년중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관계부처와 합의

*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토지가 아닌 시설물에 부과되는 것으로 건축 후 감면 여부에 대해 추후 검토키로 함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교육부와 법률제정에 합의
- 주요내용 :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 및 대학설립 허용, 학생 선발권(입학자격, 내국인 입학)의 부여, 해외송금 허용 등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 관련 복지부와 합의 조정완료

- 외국인 전용병원을 경제자유구역에만 설치하되 「동북아 중심 병원」으로 육성
- 국내자본과 합작, 우수 외국의료인력의 유치
- 외국인 전용병원의 내국인 진료는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허용 추진

59. 담배가격 인상

□ 과제개요

- 복지부의 담배가격 1000원 인상방침에 대해 재경부에서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국민여론도 다양하여 조정 실시

□ 이견내용

- 복지부 : 흡연율 하락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가격 인상이 필요하며 금년중 관계법 개정후 내년부터 시행 (당초 1000원 인상 방침)
- 재경부 : 담배값 인상시기 및 인상폭, 조성재원의 활용에 대해 이견

□ 협의·조정 추진경위

- 관계부처 실무회의(03.6.16)
 - 부처간 입장 확인
- 관계부처 공동연구 추진(03.9-03.11)
 -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한 공동연구용역 실시
- 복지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03.10.28)
 - 용역결과 중간보고 및 관계부처 의견 조율
-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03.11.15)
 - 부처간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 실패
- 총리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03.11.26)
 -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담배값을 인상기로 결정

□ 조정결과

- '04년 상반기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여 담배가격을 '0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60. 미래성장산업 품목 조정

□ 과제 개요

- 10대 차세대성장동력을 선정(8.22)하고, 세부기술별로 부처간 업무분담 방안을 확정하였으나, 일부 세부기술은 주관 부처를 복수로 선정되어 부처간 영역다툼 가능성이 상존

□ 이견 내용

- 주관부처의 의견(재정부) : 조정대상이 IT품목인 경우, 관계 부처간 합의되었던 조정원칙(01.7.13)*에 따라 처리

* ① 정부조직법·각 부처 직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조정

② 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화의 종합조정부처로서 역할

③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정보화를 담당

④ 정통부는 관계부처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기반기술개발을 추진 등

- 조정대상이 비IT품목인 경우, 부처직제 및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관련부처간 역할을 조정

○ 관계부처/집단의 의견

- 과기부 : 원천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10대 산업의 주관부처
- 산자부 : DTV,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가전산업을 담당하는 산자부에서 주관해야 함
- 정통부 : DTV, 홈네트워크는 IT품목이므로 정통부 소관

□ 협의·조정 추진 경위

- 대통령께서 부처간 역할분담과 이를 효율적으로 결합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체계를 재정부가 조속히 마련할 것(제43회 국무회의, '03.10.2)을 지시

- '03.11.24(경제장관간담회) : 산업별 주관부처 토의 등

- '03.11.27(관계부처실무자회의) : 29개 복수주관부처 품목의 조정 논의
- '03.11.29(청와대 토론회) : 산업별 주관부처 등 차세대성장동력 추진체계 전반에 대해 토론
- '03.12.11(관계부처 장관회의) :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체계 개선 협의
- '03.12.17(당정협의회) : 열린우리당, 과기·산자·정통 3개부처와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체계 개선 협의
- '03.12.23(국무회의 보고) : 차세대 성장동력 10대산업별 주관부처 선정(과기1, 산자5, 정통4) 및 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협의

□ 조정결과

- 산업별 주관부처 선정 : 과기부(바이오 산업), 산자부(디스플레이,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지능형로봇, 차세대전지), 정통부(DTV,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재경부·과기부장관 (위원) 관계부처장관 및 산업별 민간전문가

□ 후속 조치

- '04년도 과기부소관 차세대성장동력사업 공고('04.3.13까지)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개정 추진('04.4월중 공포 예정)

61. 방위비 분담협상 주관부처 변경

□ 과제개요

- '02년 체결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04.12월 만료됨에 따라 기존의 협상 주관부처인 국방부가 새로운 협정 체결 시 외교통상부로 주관부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조정 착수

□ 이견내용

- 국방부 : 국제협상과 대미관계 주무부서인 외교부에서 주관
- 외교부 : 현행대로 유지

□ 협의·조정 추진경위

- 국방부에서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과제로 등록(03.9.3)
- 통일부에서 조정 추진
 - NSC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로 하여금 안전을 상정토록 하였으나, 국방부는 안전상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임

□ 조정결과

- 국방부가 동 문제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조정과제 철회를 요구함에 따라 조정과제에서 제외(03.11.26. 제8회 주무간사회회의)

6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 과제개요

- 동법은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고, 성매매행위 및 알선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성매매 행위 및 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상정('02.9)
- 이에 대해 여성부, 복지부간 이견

□ 이견내용

- 여성부 : 기초생활보장수급특례 규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일부보완 필요
- 복지부 : 안 제14조(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의 특례) 관련사항은 기초생활보장법 입법취지와 맞지 않아 수용 곤란

□ 협의·조정 추진경위

- 의원입법 관련 부처간 이견사항으로 준조정과제로 등록(9. 3, 제2회 주무간사회회의)
- 국무회의시 상정(9. 9)되어 부처협의를 거쳐 조정 완료(10. 1, 제4회 주무간사회회의)

□ 조정결과

- 여성부에서 복지부 의견(성매매된 자 지원시설 이용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불인정)을 수용

6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소관

□ 과제개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키로 함
 -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신규재원 등에서 5조원 수준의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
- 이에 대해 행자부, 예산처간 이견

□ 이견내용

- 행자부 :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예외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
 - ※ 지역혁신사업계정 : 산자부, 지역개발계정 : 행자부에서 운영
- 예산처 : 각 부처의 칸막이식 지원방식에서 부처연계 및 통합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예산의 최종심의 및 조정권을 가진 예산처에서 관리·운영

□ 협의·조정 추진경위

- 관계부처 실무회의 지속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성안시 관계부처 의견 제시 및 반영(8월)
- 국무회의시 운영주체에 대한 정부방안을 확정하여 의결(10. 15)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12. 29)

□ 조정결과

- 기획예산처가 관리 및 운영의 주체가 되고, 행자부의 역할은 대통령령에 반영키로 합의

64. 방송법 개정

□ 과제개요

- 방송법 제27조 중 방송기본계획 심의·의결시 문광부장관과의 “합의”를 “협의”로 개정 추진(의원입법)
 - 2001. 12. 7 고흥길 의원 대표 발의

□ 이견내용

- 방송위 : 방송위의 권한강화와 방송정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의원입법안에 찬성
- 문광부 : 합의조항의 취지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방송위의 기본계획과 문화부의 방송영상정책간 상충을 방지하고 정책권을 정부와 공유케 함으로써 정부조직 밖에 위치한 방송위의 모호한 위상에 따른 위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유지 필요

□ 협의·조정 추진경위

- 방송위에 문화부 의견 수차 전달 및 실무협의를 통한 이견 조정 노력을 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함
- 국회 문광위 및 관련 의원실에 수시로 합의조항 존속 필요성 설명
- 국회 문광위에서 동법안 부결(11. 21)

□ 조정결과

- 의원입법과 관련된 기관간 이견이었으나 동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종결 처리(11. 21)

65. 지방세법 개정

□ 과제개요

- 경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의원입법안으로 발의(2. 5)
- 이에 대한 행자·재경·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간 이견

□ 이견내용

- 행자부 : 취득세, 등록세 감면으로 인한 감소재원(400억원) 보전대책 필요
- 재경부, 예산처 : 보전불가
- 건교부 : 감소재원의 50% 보전 양해 입장
- 지자체 : 재원보전 없는 감면 반대

□ 협의·조정 추진경위

- 부처간 실무회의(2. 15)
 - 조세부담의 불형평성 및 지방세수 결손 고려, 행자부에서 반대의견 제시
- 경제정책조정회의 (3. 27)
 - 지방세 추가감면 검토 입장 확인
-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시 수차례 재원보전 필요성 설명
-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8. 25)
 - 재원보전 협조 요청
- 재경부에서 감소재원의 50%(200억원)를 주행세로 보전키로 합의
- 지방세법 국회 통과(12. 9)

□ 조정결과

- 경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으로 인한 감소재원의 50%(200억원)를 주행세율 인상으로 보전키로 함

66. 소비자보호원 관할권 관련

□ 과제 개요

- 소비자보호원을 공정위로 이관

□ 이견 내용

- 주관부처(재정경제부) 의견

① 소비자정책은 각 부처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 13개 부처 참가), 재정부의 기능은 총괄·조정 기능임

- 따라서 소비자정책은 경제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경제부총리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

* 일본의 경우에도 종전 경제기획청(국민생활국)에서 소비자정책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부처 업무조정시 소비자정책의 총괄·조정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음에도 내각부(국민생활국)에서 관장토록 하였으며, 국민생활센터(소비자보호원과 유사기관)도 내각부산하 특수법인으로 존치

② 공정거래정책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으로서 그 결과 소비자가 반사적인 혜택을 보는 수가 있지만 소비자보호가 직접목적은 아님. 따라서 소비자보호 업무가 공정위로 이관되는 경우 경쟁촉진업무에 가리어 소비자보호 업무가 등한시 될 소지가 있음.

- 최근 소비자정책은 소비자 피해구제라는 소극적 역할이 아닌 사전적인 소비자 안전,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 교육 등 적극적인 조장정책으로 전환중이므로, 사후규제 업무에 치중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와 성격이 다름.

* OECD도 소비자정책위원회와 경쟁위원회를 분리·설치

* 소비자단체('99.3.9, '00.5.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중앙회('99.3.8)도 같은 이유에서 소비자정책의 공정위 이관을 반대

○ 관계부처(공정거래위원회) 의견

-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은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공정위에는 소비자보호국이 있어 과단위 조직인 재정부로부터 업무이관시 소비자정책의 충실화 가능

□ 협의·조정 추진경위 및 결과

- 공정위가 대통령직인수위에 업무보고('03.1.6)시 소비자정책 이관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정부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국무조정실에서 동 사안에 대해 검토후 그 결과를 정부혁신위로 이첩(03.12.30)하여 전반적인 정부기능 조정과 연계하여 검토토록 함(관리종결)

Ⅱ . 2003년도 조정실적

2. 조정을 진행중인 과제(13건)

1. 자격기본법 개정 관련

□ 과제개요(교육부)

- 교육·훈련 - 자격 - 산업현장이 유기적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자격체제 구축
- 국가차원의 자격정책 수립 및 자격제도의 총괄·조정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이견내용(노동부)

-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과 적용과정을 통한 검증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후 자격체제 구축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국가직업능력표준”으로 용어 변경
 - 표준의 통용성, 직업관련 통계 및 연구와의 연계성, 국가적 차원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직업적 접근이 타당
- 자격의 신설·폐지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자격 신설·폐지 등을 주무부장관에 권고하는 것은 삭제

□ 협의·조정 추진 경위

-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TF구성('03.6)
-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자격기본법 개정안 심의·의결(8.27)
 - * 국무조정실에 조정신청서 제출(11.28)
- 관계부처·전문가회의 개최(교육문화심의회관 주재, 12.3)
 - * 자격체제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자격정책심의회 기능 등 10개 사항 조정
- 관계부처 1급회의 개최(사회수석조정관 주재, 12.30)
 - * ‘국가직무능력표준’ 용어 사용, ‘자격체제’ 도입에 합의, 세부적인 관련조항 정리는 과장회의를 통해 조정토록 결정

□ 향후 조정계획

- '04.2월까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자격체제 관련 조항 조정 완료

2. 한국영화의무상영제(Screen Quota) 관련

□ 과제개요

- 한미투자협정(BIT)과 관련, 미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문제와 연계협상을 요구함에 따라 한국영화 상영일수 조정 필요성 대두
 - *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46일(40%) 이상을 한국영화를 상영토록 규정. 단, 문화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40일 단축 가능 (영화진흥법 제13조, 제15조)

□ 이견내용

- 한미투자협정 전에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스크린쿼터 축소문제임
 -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므로 협상의 진전을 위하여 한국영화상영일수 조정 필요(재경부, 외교부)
 - ※ 한국영화시장 점유율 : '98(25.1%), '99(36.1%), '00(35.5%), '01(49.8%), '02(48.5%), '03.9(47.9%)
- 문화는 교역대상이 될 수 없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는 필수적임
 - 2001년부터 시장점유율 40%를 상회하였으나 특정장르 소수 영화에 편중되어 있어 자생기반 취약(문화부, 영화계)

□ 협의·조정 추진 경위

- 대통령 방미관련 관계장관간담회시 스크린쿼터 문제를 논의 하였으나 부처간 합의실패('03.4,5월)
- 청와대(정책실장주재), 정부·영화계 인사 등 간담회 실시하였으나 절충 실패('03.6.13)
- 관계부처 국장급 간담회 개최(사회수석조정관 주재, '03.8.4)
- 대통령, 영화인과의 간담회 개최('03.11.19)
 - ▶ 영화계가 주장한다면 당장은 밀어 붙이지 않겠다

□ 향후 조정계획

- 향후 한·미 BIT 추진동향, 부처별 입장, 영화계 등 사회단체 동향 등을 보아가며 추진방향 결정

3. 해외문화홍보원 일원화

□ 과제개요

- 국정홍보처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03.5.27)
 - 국정홍보기능·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해외문화홍보원 일원화 문제를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와 논의 조정
- 현재 해외문화홍보원은 직제상 외교부 소속이나, 국정홍보처 (6개소)와 문화관광부(4개소)에서 예산, 사업운영 등 소속 기관처럼 운영

□ 이견내용

- 국정홍보처 : 해외홍보는 종합적·전략적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만큼, 문화홍보원을 홍보처로 이관
- 문화관광부 : 해외홍보 추세가 “문화홍보 중심”, “정부-민간 연계 홍보”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홍보원을 문화부로 일원화
- 외교통상부 : 문화홍보원을 통합하여 재외공관 소속으로 일원화
- 행정자치부 : 전반적인 문화홍보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

□ 협의·조정 추진경위

- 국조실 주관, 문화부·홍보처·외교부·행자부 등 관계부처 회의 개최, 부처별 입장 파악('03. 8.12)
- 국조실 주관, 해외문화홍보 전문가회의 개최, 전문가 의견 청취('03. 8.19)
- “해외문화홍보원 일원화방안” 검토, 국무조정실장, 총리님 보고('03.10)
- “해외문화홍보원 일원화방안” 청와대 국정상황실 송부('03.11.26)

□ 조정결과

- 국조실 검토(안)을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 송부, 정부조직개편 검토시 활용토록 조치('03.12.2)

□ 향후 계획

-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 검토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과제 개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02.12월)에 따라 기존 고시로 규정된 「전기통신사업자의금지행위유형및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변경 필요
- 정통부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의 이견으로 입법 추진 지연

◇ 시행령(안) 중 주요내용

-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금지행위(시행령 제10조의5 제4항 제1호~제11호)
 - 이용약관을 위반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및 요금 부과
 -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이용자 차별 및 결합판매

□ 부처간 이견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

-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 규제는 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수행해야 함

< 정보통신부 >

- 사업법에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임

□ 조정 결과

- 국조실 조정('03.12.10)
 - 결합판매 관련규정의 규제대상사업자를 시행령 시행후 3년 까지의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고, 그 이후는 기간통신 사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키로 함

□ 향후 계획

- 동시행령 개정안에 국조실 조정안을 반영하여 내년 초 국무회의 심의 예정

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마련

□ 과제개요

- 장기(1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 대상인 사유대지의 매수비용 확보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마련
 -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 결정된 3,398km²중 942km²
 - * 사유대지 매수비용 : 약 11조원

□ 부처간 이견내용

< 건설교통부 >

- 불필요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등 지자체의 자구 노력이 선행된 후 중앙정부 지원

< 행정자치부 · 지자체 >

-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곤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불가피

< 기획예산처 >

- 지자체가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정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부당

□ 조정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 '02.12월 관계부처(건교·행자·기예처) 차관회의에서 '03년 상반기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부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
 - 건교부 주관 실무 T/F팀에서 대지보상 재원 확보·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대책(안)을 제출 ('03.10.10)
 - 실무 T/F팀이 마련한 대책(안)에 대해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
- ※ '04.2까지 전반적인 정책방향 정립, '04상반기까지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6.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관련

□ 과제 개요

-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위해 전자문서의 유통 및 보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범위를 전자거래에서 문서유통까지 확대
 - 전자문서 유통·보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제도 도입

□ 이견 내용

- 산자부 :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에 대비,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무결성 확보를 위한 공인제도 필요
- 정통부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도입은 입법 목적과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진입규제

쟁 점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적용범위 확대	·전자거래(재화,용역거래)외 전자문서에 의한 일방의 의사표시, 상대방에 대한 통지, 급부의 이행 등도 법적용 범위에 포함	·적용범위의 확대는 법률 명칭 및 법목적과 불일치 ※ 동법의 전자문서 규정과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 규정을 통합하여 전자문서및 전자서명에관한일반법 제정이 필요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 도입	·전자문서의 보존, 송수신 대행 및 중계, 증명 등 전자문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산자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함(공인 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	·전자문서 보관업은 민간자율시장 영역으로 인위적 지정제 도입은 반대 ※ 기존 공인인증기관의 부가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 가능한 영역임

□ 협의·조정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03.8~9월중 관계기관으로부터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동 사안은 규제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제정책 심의·조정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조정
-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간 재협의후 2004년 4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예정

7. 서해 어로한계선 이북어장 어선조업통제

□ 과제 개요

- 서해 어로한계선 이북어장(서해5도 부근)의 어선 출입항 및 조업통제와 관련하여, 국방부(군 통제→해경 통제로 변경)와 해수부·해경(군 통제 지속)이 이견

□ 이견·갈등 내용

- 국방부
 - 어로보호 및 조업통제는 해경의 고유업무이나, 어로한계선 이북어장의 우리어선 보호에 대한 통제업무가 누락
 - 군이 민간어선의 출입항 및 조업통제까지 직접 수행하는 것은 군의 기본업무 수행상 곤란
- 해수부·해경
 - 서해 어로한계선 이북어장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해역이므로 군의 통제가 필수적
 - 해경이 관장할 경우 중무장한 경비정 12척이 추가 소요되나 경비정 및 적정상황에 대한 정보력 부족 등 제반여건상 수용 곤란(경비정 추가확보 등에 2,000억원 소요 주장)

□ 협의·조정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02.10월 국방부에서 통제 변경을 요구한 이후 기관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어 '03.11월 해수부에서 국조실에 업무조정신청
- 국조실의 수차례('03.12.3/12.12/12.29)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기관별로 다소 진전된 입장을 도출
 - 모두 「협조기관」으로서의 적극적 협조역할을 제시했을 뿐이며, 「관장기관」에 대해서는 이견이 지속
- 조정안을 마련하여 '04.2월까지 조정 완료 추진
 - 통제기관 변경의 타당성 여부와 예산·인력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안 마련

8. 오염물질의 해안배출관리법 제정

□ 과제 개요

-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동법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이견 조정
 - * 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농해수위 계류중

□ 이견·갈등 내용

- 해수부
 - 기존 환경법제는 육상에서 발생하여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동법 제정 필요
- 환경부
 - 동법은 기존 환경법제와 중복 및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정 반대

□ 협의·조정 추진경위

- 의원입법 관계차관회의(11.10)시 동법안에 대해 부처간 이견 조율을 통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의원을 설득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함
- 03.11월중 2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해안배출실태조사 등 일부사항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였으나 법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이견 지속
- 03.12.18일 국장급 조정회의를 통해 제시한 국조실 조정안에 대해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는 수용입장이나 해수부는 이견 지속

□ 향후계획

- 내년초 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조정완료 추진
 - * 국회의 법안처리상황 고려

9. 수도권 규제 합리화

□ 과제 개요

- 집중 완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이견 내용

- 산자부 의견
 - 현실적 규제완화 수요만을 반영하여 산업집적활성화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부분 개정
- 재경부 의견
 - 국내·외국기업, 대·중소기업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는 등 현행 수도권 규제를 전면 개편

□ 협의·조정 추진경위

- 재경부·건교부 국장급 회의 개최(03.5)
-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설정을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03.7)
- 경제차관회의 개최(03.9)
- 경제장관간담회 개최(03.12)
 - * 첨단업종의 공장 증설,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결정
- 산업집적활성화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3.12.31)

□ 향후 조정계획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정('04.1월초) 및 개정완료시 조정과제에서 종료시킬 계획

10. 우체국 금융개편

□ 과제 개요

○ 과제의 개략적인 내용

- 우체국금융이 외환위기 등 금융시장 혼란기에 급성장하자 외국계 생보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 정부의 지급보장, 예보료 및 법인세 미납부 등 불공정 문제 제기
- 우체국금융의 제도개선 등 중장기 발전방안을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에서 마련하여 추진

□ 이견 내용

○ 재경부 · 금감위

- 기간을 정해 민영화를 추진하여 타금융기관과의 불공정문제 해소(우체국 특혜 축소방침)

○ 정통부

- 우체국금융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민영화 추진(우체국 특혜 축소방침 반대)

□ 협의 · 조정 추진경위

○ 우체국금융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T/F구성(2003.7.31) 및 1차('03.8.22), 2차('03.9.25), 3차('03.10.30), 4차('03.11.28), 5차회의('03.12.26) 개최

- 제5차 T/F회의에서 지금까지의 T/F논의를 바탕으로 우체국금융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도출

* 향후 5년 동안 민영화에 대비한 준비 시행, 우체국예금제도 개선 관련하여 예금회계분리 및 경영공시의무 부과, 1인당 예입한도 도입 등

* 우체국 보험제도 개선관련 재무건전성 감독기준 도입, 위험관련 및 공시관련 기준 도입, 회계기준과 재무제표 작성 및 거리인 확인의무 도입 등

□ 향후 조정계획

- 우체국금융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 추진하고 향후 정통부가 작성중인 우체국금융발전방안 수립완료시, 조정과제에서 종료시킬 계획('04.2 예정)

11.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통계 조정

□ 과제 개요

- 현재 중소기업 인력부족율에 관한 통계를 노동부 및 중소기업청이 각각 조사 발표하여 정부통계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

* 02년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중기청 9.36%(20만명), 노동부 4.56%(8만명)

□ 이견 내용

○ 주관부처(노동부·통계청)의 의견

- 노동력수요조사는 76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 조사로 기업들의 인력부족율을 객관적으로 집계(노동부)
- 노동부의 통계가 중기청의 통계보다 규모·산업·직종별 등에서 광범위하고 정확한 것으로 보이며 중기청에서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노동부 통계를 활용하면 되므로 노동부 통계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함(통계청)

○ 관계부처(중기청)의 의견

-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청의 자체조사 통계 필요함. 다만, 통계수치의 차이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중기청)

□ 협의·조정 추진 경위

- 2003. 7 24일 재정부 주재로 노동부, 통계청, 중기청 통계조정 회의를 개최한 후 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정안 제시

- ◇ 정부통계에 대한 신뢰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기법이 체계적이고 시계열자료가 풍부한 노동부의 노동력수요 조사를 중소기업 인력부족에 관한 정부공식통계로 지정함
- 앞으로 중소기업 인력부족을 통계는 노동부가 전담하여 조사·발표하되, 통계개선에 대한 중기청의견 적극 수렴
- 중기청은 인력부족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고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를 계속함
- 통계청은 중기청의 중소기업 인력통계조사표에서 인력부족 부문은 삭제하고 중기청의 통계변경을 승인함

- 중기청에서 상기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 자체 조사한 인력부족률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정부통계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 향후 조정계획

- 중기청의 통계조사계획 일정등을 감안하여 '04년도 상반기에 재경부 주재로 재차 통계조정회의를 개최(국조실 협조 필요) 예정

12. 유아교육, 보육행정체제 정비

□ 과제개요

- 교육부는 3-5세아의 유아교육을, 복지부는 0-5세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중복행정체제로 이원화된 유아교육, 보육행정체제 정비 필요

□ 이견내용

- 교육부 : 교육과 보호를 통합한 교육복지 중심의 일원화체제로 전환
- 복지부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의 / 유치원은 유아조기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종일보호서비스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상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제공토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 협의·조정 추진경위

-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보육업무를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토록 지시(03.3.25)
 - 관련사항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중
- 복지부 소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교육부 소관의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각각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입장 조정 추진
 -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주재 부처협의(03.12)
 -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 유아교육및보육기획단 운영(03.12)
 - * 체제정비와 관련 3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정부조직과 관계된 문제로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에서 다루기로 함

□ 향후계획

- 국무조정실에서 동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혁신위로 제출하여 전반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조치할 계획
- 국회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정부입장이 반영되도록 설득할 계획

13. 국립현충원 관리권 관련

□ 과제개요

- 국립현충원의 관리권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보훈처간 이견

□ 이견내용

- 보훈처 : 현행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국립현충원은 업무성격상 보훈처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므로 이관 필요
- 국방부 : 관리대상, 영현수집, 관리의 전통성,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국방부에서 관리

□ 협의 · 조정 추진경위

- 보훈처의 문제제기에 따라 조정과제로 등록(03.9.3 제2차 주무간사회의)
 - 통일부에서 1차적으로 조정기로 함
- 통일부 주관 관계부처 실무회의(03.10.22)
 - 기관간 이견대립이 심하여 합의에 실패
- 통일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신청하여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조정기로 함(03.12.10, 제9차 주무간사회의)
- 대통령께서 남극기지 사고로 인한 국립묘지 안장기준 등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 국립묘지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지시(03.12)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03.12.24)하여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 방안 논의

□ 향후계획

-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립묘지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국립현충원 관리권 관련사항도 내년 상반기중 확정 계획

참 고 자 료

1.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

정부업무조정등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447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간 정책의 조정에 관한 절차와 조정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정책조정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간 업무협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소관업무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업무의 기획 및 수립단계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국민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상호간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상호간 협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제3조(정책의 공개) 여론수렴을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간 업무협약이 필요한 사항을 공개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공개한다. 이 경우 주관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정책시안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조(당사자간 조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협약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간 이견이 발생하는 때에는 주관행정기관의 책임하에 당사자간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간 조정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

책분야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조정관리주무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정책분야별 조정) ①조정관리주무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간 이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을 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 통일부장관은 통일관계장관회의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회부하여 이를 조정한다.

1. 경제정책분야 : 재정경제부장관
2.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통일 및 남북대화에 관한 정책분야 : 통일부장관
4. 사회·문화 및 복지분야의 정책분야 : 행정자치부장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관리주무기관 또는 이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국무조정실장의 조정) 국무조정실장은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간 이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한다.

제7조(국무총리의 조정)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관리주무기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간 이건을 조정하게 하거나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조정신청의 방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신속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과제의 등록) 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간 이견을 조정과제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시한) ①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과제를 등록하는 때에는 조정과제의 성격,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조정시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는 정책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정과정의 기록·관리) ①주관행정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간 조정의 착수시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정과제의 진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종결 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정과제에 대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조정관리주무기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정종결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황의 확인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 ①조정과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정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를 둔다.

②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는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과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리주무기관의 1급공무원, 국정홍보처 국정홍보국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이 된다.

④조정관리주무기관회의의 정기회의는 격주 1회 개최하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조정활동실적의 제출 등) 국무조정실장은 조정관리주무기관의 조정과제 등록현황, 조정활동실적, 향후 조정계획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조정백서의 발간) 국무조정실장은 매년 조정관리주무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의 조정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정신청서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을 신청함.		
피신청기관		
신청기관		
신청일자		
제 목		
주관중앙 행정기관	담당부서	
관계중앙 행정기관		
이건내용	주관중앙행정기관	관계중앙행정기관
조정필요성		
기타사항		
신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조정과제 등록·관리서

과제명			등록일자	
등록번호			중요도	
현재단계		진행평가		
조정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주관중앙 행정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관계중앙 행정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이견내용	주관부처		관계부처	
	첨부			
조정필요성 /전략				
	첨부			
조정시한				
조정일지	일자	내용		첨부
향후계획				
비고 (장애요인 등)				
의견쓰기	대통령			
	국무총리			
조정결과 (조정완료시)			완료일자	
	첨부			
평가 및 시사점				
	첨부			
등록후 변동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당사자간 조정 관리카드

과제명			
주관중앙 행정기관		담당부서	
관계중앙 행정기관		담당부서	
이전내용	주관부처		관계부처
조정필요성			
당사자간 협의내용	일자	내용	
향후계획			
기타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조정종결서

등록번호			
과제명			
조정기관		담당부서	
주관중앙 행정기관		담당부서	
관계중앙 행정기관		담당부서	
조정결과			
기타사항			
조정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참 고 자 료

2. 국무회의 보고자료

정책조정절차 제도화 방안

2003. 8. 12

국무조정실

- 목 차 -

I. 추진배경 1

II. 정책조정절차 제도화 방안 2

III. 토의사항 6

< 별첨 >

1. 분야별 장관회의 구성 및 근거 7
2. 미국의 공공분쟁 해결실태 및 한국의 제도도입방안(요약) 8

< 별도자료 >

◇ 정책조정과제 목록

I. 推進背景

◇ 대통령께서 정책조정절차의 제도화 방안 검토 지시
(7.28, 수석보좌관회의시)

- 정책환경의 복잡·다기화, 정책과정에서의 참여확대 등으로 부처간 이견 및 관계집단과의 갈등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으며 점차 확대
 - ▲ 스크린쿼터 축소문제, 담배값 인상문제 등과 관련한 부처간 이견
 - ▲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과 관련한 환경단체, 종교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새만금,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운하, 원전수거물 관리부지 등)

- 정책수립 초기단계의 부처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화 될 경우 부처이기주의, 정책혼선, 갈등해결능력 미흡 등으로 비춰질 수 있음
 - 현재 중앙행정기관간 협의·조정체계의 제도화 미비, 조정과제의 체계적 관리 미흡 등의 지적이 있음

- 따라서 정책수립과정에서의 부처간 이견·관계집단과의 갈등을 체계적 협의·조정·관리를 해 나가는 조정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조정 관련 기본원칙 마련
 - ② 조정절차 및 조정시스템 운영 체계화 등 조정절차 확립
 - ③ 조정과제 등록관리, 조정결과 이행확보 등 체계적 관리 강화

Ⅱ. 政策調整節次 制度化 方案

- ◇ 이해관계인의 참여 확대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전에 갈등소지를 최소화
- ◇ 당사자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책조정절차를 제도화
- ◇ 갈등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1. 適用範圍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 적용대상 ① 중앙행정기관간 이견
② 중앙행정기관과 관계집단과의 갈등 등

* 지방자치단체관련 분쟁조정(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

2. 調整原則

① 分권과 자율에 의한 해결

- 당사자간 자율 해결이 원칙, 상급기관의 조정은 보완적으로 실시

② 조정과정의 민주성 제고

- 폭넓은 의견수렴 및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운영

③ 조정과정에서의 원칙과 신뢰 유지

- 조정자 및 당사자는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조정절차에 임함

④ 조정결과의 책임성 확보

- 조정결과의 충실한 이행 및 일관성 유지

3. 政策調整節次

① 당사자간 협의·조정

- 정책주관부처는 관계부처·집단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정책수립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
 -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
 - 관계집단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는 주관부처가 공개하되 정책시안임을 명백히 표명

-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견발생시 먼저 정책주관부처 주도로 당사자간 협의·해결

- 당사자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분야별 주무부처의 주관하에 분야별 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조정
 - ▲ 경제분야 : 재경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경제장관간담회)
 - ▲ 교육인적자원분야 : 교육부 (인적자원개발회의)
 - ▲ 통일외교안보분야 : 통일부·NSC (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
 - ▲ 사회분야 : 행자부 (사회관계장관회의)

(별첨1 : 『분야별 장관회의 근거 및 구성』 참고)

※ 조정과제는 국무조정실에 등록하여 통합관리

(별도자료 : 『정책조정과제 목록(8.11현재)』 참고)

② 국무총리실의 조정

- 4대분야별 주무부처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국무총리실에 조정 신청
 - ※ 필요시 국무총리실에서 직권으로 조정
- 국무총리실에서는 조정필요과제에 대해 책임 조정·종결
 - 국무조정실장주재 관계차관 조정회의,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 조정회의 운영 강화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긴급현안을 중점 조정
- 관계집단 등과의 갈등사안은 주관부처에서 책임해결 하되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총리실에서 조정 추진
 - 필요한 경우 각계인사 등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 또는 T/F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조정
 - 「대화과 타협」을 원칙으로 조정해 나가되 장기간의 결정 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예상될 경우 공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조속히 결정
- 국무조정실에서는 조정과제의 통합관리 및 조정진행상황 점검·독려
 - 4대분야별 간사회의 정례운영(월2회)

③ 대통령의 최종 결정

-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 등은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조정·종결
- 특히 주요국정과제 관련 갈등은 청와대에서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직접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결(예:노사개혁 로드맵 등)

④ 조정결과의 이행

- 각 부처는 조정결과를 수용하고 일관되게 추진
- 국무총리실에서는 부처간의 조정업무 협조실태 및 조정결과 준수노력 점검

→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인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

▲ 이견과제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 ▲ 협의·조정이 없이 확정된 정책 인양 발표하는 사례 ▲ 정부내 조정절차를 우회하거나 조정결과에 반하여 의원입법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 ▲ 조정결과 이행을 지연·해태하는 사례 등을 중점 점검·평가

4. 調整專門人力 養成

- 갈등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내부전문가 양성
 - KDI 정책대학원을 대외협상 및 대내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협상교육센터』로 개편·운영

5. 推進計劃

- 9월중 ‘정책조정절차및조정업무운영에관한규정’(안) 제정
-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4대분야별 장관회의 운영 활성화 및 국무조정실의 조정과제 통합관리 강화

Ⅲ. 討議事項

□ 부처간 미합의된 정책의 사전공개 관련

○ 공개범위, 공개방법·수단, 공개시점 등

- * 미합의된 정책의 사전공개시 정책추진의 투명성 및 국민의 관심 제고, 여론수렴 확대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정책대상 집단간 갈등의 심화 등으로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정부내 정책혼선으로 비춰져 정부의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음

□ 정책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

○ 대통령령, 대통령훈령 등 규정의 형식 문제

- * 대통령령 : 대내외적 효력(국민에게도 적용), 입법예고·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재 거쳐 확정·공포

대통령훈령 : 대내적 효력(정부내 업무에 적용), 입법예고·국무회의 심의·공포대상 아님, 대통령 재가후 확정·시행

○ 규정의 내용 문제

- 보고서에 제시된 조정원칙, 조정절차 등에 대한 수정 및 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 조정주관기관 선정 문제

- 분야를 달리하는 부처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주무부처가 이견 조정의 당사자인 경우의 조정주관기관 선정 관련 사항

* 조정시한 설정문제 등

□ 기타 정책조정절차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 별첨1 : 분야별 장관회의 근거 및 구성 >

분야	근거	구성	조정대상 예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 ○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대령) -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 경제장관간담회(총훈) - 주요경제정책에 대한 경제관계 부처간의 협의 및 조정 	<p>< 경제정책조정회의 > 경제부총리주재 행자부·과기부·문광부·농림부·산자부·정통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교부·해수부·예산처장관·국조실장·공정위·금감위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 안전관련 부서장</p> <p>< 경제장관간담회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문광부·농림부·산자부·정통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교부·해수부·예산처장관·국조실장·공정위·금감위위원장·한국은행총재, 안전관련 부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 ○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개선 관련 부처간 이견 ○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지역법의 통합관련 부처간 이견 등
교육 인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 ○ 인적자원개발법 - 인적자원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각 부처간 협의·조정 	<p>< 인적자원개발회의 > 교육부총리 주재 재정부·행자부·과기부·문광부·산자부·정통부·복지부·노동부·여성부·예산처장관·인사위원회·국조실장 및 홍보처장, 안전관련 부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기본법 개정관련 부처간 이견 등
통일 외교 안보	<p>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 관한규정(대령)</p> <p>- 국가안전보장에 관련 되는 사항을 협의</p>	<p>< NSC 상임위 >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중 임명 통일부외교부국방부장관 국정원장·NSC사무처장 *국조실장은 출석·발언 *대통령비서실 외교보좌관 및 국방보좌관은 배석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핵 정부대응방안 ○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정부 입장 등
사회	<p>사회관계장관회의규정(대훈)</p>	<p>< 사회관계장관회의 > 행자부장관 주재 법무부, 문광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예산처장관, 국조실장, 홍보처장, 안전관련부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업무 소관 관련 부처간 이견 ○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관련 부처간 이견 등

< 별첨 2 >

미국의 공공분쟁 해결실태와 한국의 제도도입방안

(강영진, 조지메이슨대학 박사과정)

□ 미국의 개발분쟁 해결-예방실태와 제도

1.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 당사자간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3자의 중재자가 개입하여 해결

* 워싱턴주의 스토클미강 댐건설분쟁(1974)시 중재자의 중재로 4개월간 대안의 타당성을 수 차례 검토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선택

2. 분쟁해결의 제도화

- 소송, 시위, 농성 등이 아닌 협상, 중재, 음부즈 등 대안적 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수단 개발

- 행정분쟁해결법의 제정(1990)

- 연방정부 각 기관의 ADR도입을 의무화하고 시행방법 제시

* 1)각 행정기관은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에 의한 분쟁해결정책을 개발 2) 각 행정기관의 장은 분쟁해결 전문가를 고위직에 선임 3) 관계공직자들이 효과적인 분쟁해결에 관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함 4) 각 행정기관은 정부사업 관련 계약, 자금지원, 정부사업 발주 등에 있어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을 최대한 적용

- 클린턴 대통령의 분쟁해결 노력 강화

- 연방정부 각 부처에 중재 음부즈제도 등 ADR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해당사자간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노력을 강화토록 하는 지침 시달(1998)

* 농림부는 갈등예방-해결센터(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center of USDA)를 상설 운영

3. 참여민주주의에 의한 분쟁 예방

- 각종 규제나 개발사업 등 중요한 행정행위로 직접 영향을 받는 시민 또는 업계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백악관에 설치하여 개발 부처, 환경부, 환경단체, 오염배출업체 등 ‘적대세력’들이 모여 토론과 협상으로 공동선을 만들어 가는 방식 제도화(예: 환경친화적 산업공원 건설 추진)

□ 한국의 공공분쟁해결제도 도입방안

1. 행정분쟁 해결절차의 제도화 및 전담기구 설치

- 미국의 행정분쟁해결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 행정분쟁에의 ADR을 의무화하고, 합리적 해결절차를 규정
- 분쟁이 빈발하는 정부기관의 경우 내부에 분쟁해결지원 센터를 설치
-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특수기구로 공공분쟁해결 연구지원센터 설치
 - 우리 실정에 맞는 분쟁해결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설, 각 기관의 분쟁해결시스템 설치 운영 지원

2. 참여행정을 통한 분쟁 예방

- 가능한 모든 행정절차를 참여민주주의 방식으로 전환
 - 특히 국토개발, 환경관리 등 공공분쟁의 소지가 있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및 업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 참여행정은 선심으로서가 아니라 제도로 정착될 필요
 - 당사자들의 참여를 법률 혹은 내규로 보장하고 그 범위와 절차를 규정할 필요

3. 분쟁해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다수의 분쟁을 건설적인 대화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능한 진행자 양성
 - 전문 중재인과 같이 직업적으로 분쟁해결활동에 종사하는 전문가 양성 필요
 - 각 정부기관에서 그 기관의 분쟁해결문제를 전담할 내부 전문가 양성

- ◇ 참여민주주의적인 행정의 도입으로 정부가 먼저 패러다임 전환
- ◇ 보다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선진적인 법과 제도 정비
- ◇ 이를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

* 이상은 성공회대 NGO연구보고서② ‘갈등분쟁 해결매뉴얼’(2000년)중 ‘미국의 공공분쟁 해결실태와 한국의 제도도입방안’(강영진, 조지메이슨대학 분쟁해결연구원 박사과정)을 요약한 것임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실 총괄심의관실	
연락처	3703-3859

금년도 정책조정실적 및 마무리 계획

2003. 1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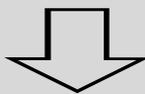
국무조정실

- 목 차 -

I. 금년도 정책조정 실적	1
1. 여건변화 및 대응	1
2. 정책조정체계 제도화	2
3. 정책조정실적 및 현황	3
II. 잔여과제 마무리 계획	5
1. 연내에 종결할 과제	5
2. 정부조직 기능개편과 연계하여 처리할 과제	6
3. 처리방침을 속히 결정해야 할 과제	7
III. 평가와 향후과제	8
<붙임> 조정중인 과제 주요내용 및 처리계획	9

- ◇ 國務調整室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철학 실현과 국정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각종 국정과제를 관리
- ◇ 금년도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각종 과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중에 있음

① 정책조정과제(78건)	중앙행정기관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 주무간사회의를 통해 격주로 점검
② 사회갈등과제(24건)	중앙행정기관과 관계집단/주민 등과의 갈등과제,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③ 대통령 핵심공약과제(177건)	분기별 실적종합, 반기별 점검
④ 대통령 지시사항(287건)	실시간 관리, 분기별 점검
⑤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과제(129건)	반기별 평가



- ◇ ② ~ ④까지의 488개 과제중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지난 10월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오늘은 ①**정책조정과제**의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음
- ②**사회갈등과제**는 다음주 국무회의(12.16)시 보고
- ④**대통령 지시사항**과 ⑤**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과제**는 변화진단 결과와 함께 12.22(월) 보고
- ③**대통령 핵심공약과제**는 04.2월말 참여정부 1년에 즈음하여 별도로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음

I. 금년도 정책조정 실적

1. 여건변화 및 대응

□ 우리사회의 민주화·다원화의 진전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권위적·폐쇄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게 되었음

□ 이러한 우리 사회전반의 변화에 부응하여 참여정부는 자율과 분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개방과 참여의 의사결정구조를 지향

< 참고 : 대통령 관련 말씀 >

개방형 의사결정구조로 발전하면 밀실형 의사결정구조는 거의 없어질 것.
개방형 의사결정구조는 다소 시끄럽고, 다소 리더가 흔들리는 것으로
비칠지 모르나 수평적·협력적 리더십이 형성되고, 독자적 리더십이
아니라 민주적 리더십이 형성될 것 (11.19. 대통령, JC임원간담회)

□ 참여정부의 이러한 국정운영방식의 변화는 정책조정과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

○ 정책결정 이전에 부처간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정책혼선이나 정부내 조정기능 부재 등으로 비쳐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정책 결정 이전의 부처간 이견에 대해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 및 시스템을 제도화 하였음

○ 앞으로 정책조정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정과정에서의 부처간 협력과 조정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함

2. 정책조정체계 제도화

□ 정부업무조정등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정·시행(03.10.31)

- 부처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①조정이전 부처간 협의단계 ②조정단계 ③조정이후 사후관리 단계로 나누어 관리
 - * 조정이전단계 : 사전협의 의무화, 공개시 협의가 필요한 시안임을 밝혀 공개
 - * 조정단계 : 당사자조정→정책분야별 조정→총리실 조정의 절차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총리실에서 직접 조정
 - * 조정이후단계 : 합의결과 이행실태 확인·평가
- 조정과제의 등록, 조정신청, 조정시한 설정 및 추진상황 점검체제 확립

□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시스템 도입

-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시스템을 도입(03.5)하여 매주 2회 운영
 - * 1~2차 화물연대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담배값 인상 방침 확정, 철도노조 관련 공적연금간 연계방안 확정 등

□ 4대분야 주무간사회의 운영

- 4대분야 주무부처 간사회의를 신설(03.8)하여 격주로 운영
 - * 청와대, 국무조정실, 재경부, 교육부, 통일부, 행자부 참여
- 국무조정실 및 4대분야 주무부처의 조정활동 실적 및 향후 조정계획을 점검·독려
 - * 관계차관회의, 관계장관회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상정 등 조정과제 처리방향 제시

⇒ 중앙행정기관간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훈령제정), 관리체계(주무간사회의) 및 최종 조정시스템(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의 확립으로 정책조정 시스템의 제도화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

3. 정책조정 실적 및 현황

□ 참여정부 출범이후 78건의 정책조정과제중 66건의 조정을 완료하고 12건의 조정을 추진중

< 붙임 > 조정중인 과제(12건) 주요내용 및 처리계획

정책조정을 완료한 주요과제

- 통합복권법 제정
 - 현행 개별복권발행체제를 통합하고, 복권관리기금을 신설
-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 연금정책협의회(비상설)를 총리실에 두고, 기금운용위원회(상설, 사무국 설치)를 복지부 소속으로 하기로 함
-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기간 단축
 - 병역특례기간(5년)을 1년 단축하는 방안 합의, 03.10월부터 적용
-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 기관별 재원분담방안 합의
- 백두대간보전법 제정
 - 법안은 환경부 및 산림청 공동소관, 정책방향은 환경부가, 정책수립은 산림청이 주관기로 함
- 집회시위시 확산기 소음규제
 - 소음진동규제법에 확산기 소음규제 근거를 설정하고,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준수 의무 및 벌칙규정 신설기로 함
 - * 국회 환노위에서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이 부결(03.11.13)됨에 따라 집시법에 소음규제 근거를 반영하여 개정 추진중(행자위 통과, 03.11.19)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연내 특별법 제정 및 경유승용차 판매 허용방침 확정
- 판교신도시내 학원단지 조성
 - 특수목적고 등 우수학교 유치와 교육시설 구역조정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학원집단지구는 추진하지 않기로 함

11.17 보고후 추가로 완료한 과제 (5개)

○ 담배가격 인상

-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하여 내년 하반기에 인상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11.26)

○ 軍 기능인력 양성계획

- 국조실에서 조정한 대로 6,300명 증원하여 17,160명을 양성하는 것으로 확정(11.11)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 도입

-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되, 법무부에서 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중 입법 추진(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 11.28)

○ 경제자유구역 추진관련 후속법령 정비

- 각종 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생태계보전협력기금,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감면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 방위비 분담협상 주관부처 조정

- 주관부처(국방부)에서 조정요청 철회

*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01년 타결, 02-04년 적용)의 유효기간이 04.12월로 만료되어 내년중 새로운 협정 체결 필요. 국방부에서는 협상 전문성을 갖춘 외교부에서 앞으로의 협상을 주관해야 한다면서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최근 이러한 요청을 철회(11.26)

Ⅱ. 잔여과제 마무리 계획

- ◇ 잔여과제(12건)의 성격, 조정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3가지 처리방침 확정
 - ① 조정안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큰 과제는 보다 적극적인 조정을 실시하여 연내 마무리(5건)
 - ② 정부조직 및 기능과 관련 있는 과제는 연내에 처리방침을 정한 후 정부혁신위로 이관하여 정부기능개편과 연계(4건)
 - ③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과제는 처리방침을 속히 확정(3건)

1. 연내에 종결할 과제 (5건)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전기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 금지규제와 관련하여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자는 정통부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제할 것을 주장하는 공정위간 이견
⇒ 국무조정실장 주재 조정회의를 통해 조속히 종결 추진

② 서해 어로한계선 이북어장의 어선조업통제

- 서해의 어로한계선 이북(NLL 부근) 어장의 조업통제를 해경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해수부와 해경은 현행대로 국방부에서 담당할 것을 주장
⇒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안을 마련, 연내 합의 유도

③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 전자거래기본법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산자부와 이에 반대하는 정통부간 이견
⇒ 금주중 규제위(분과위)에 상정 또는 조정회의를 통해 결론 유도

④ 자격기본법 개정

- 자격 체제(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력, 학위, 자격 등이 상호연계되어 관리·운영되는 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교육부와 이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노동부간 이견
⇒ 금주중 국무조정실 조정을 통해 마무리를 추진하되, 미합의시 12월중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결론 유도

⑤ 우체국 금융개편 관련

- 우체국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장, 우체국의 예보료 및 법인세 미납부 등 타금융권과의 공정경쟁 문제 관련 이견 (정통부-재경부,금감위)
⇒ 12월중 5차 T/F 논의를 거쳐 발전방안 마련 예정
* 발전방안 마련이 지연될 경우 12월 마지막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 상정 검토

2. 정부조직 기능개편과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과제 (4건)

① 해외문화홍보원 일원화 (문광부-홍보처-외교부)

② 소비자보호원 관할권 (재경부-공정위)

③ 유아교육·보육행정체제 정비 (복지부·여성부-교육부)

④ 국립현충원 관리권 (국방부-보훈처)

- ⇒ 12월중 국무조정실에서 입장을 정리, 정부혁신위로 이관하여 논의토록 조치 예정

* 해외문화홍보원 일원화 과제는 정부혁신위로 기이관 조치(12.2)

3. 처리방침을 속히 결정해야 할 과제 (3건)

① 스크린쿼터 축소 관련

○ 스크린쿼터(146일) 축소 관련 이견(문광부-재경부,외교부)

* 외국사례 : 스크린쿼터제 실시국가 8개국

- 그리스(28일), 아르헨티나(28일), 브라질(49일), 스리랑카(84일), 스페인(91일), 프랑스(140일), 한국(146일)

* 자국영화 시장점유율(2002년도)

- 한국(48.5%)

- 미국(95%), 프랑스(35%), 이탈리아(22.2%), 스페인(13.7%), 독일(11.9%), 영국(8.3%)

⇒ 필요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등에서 논의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매수청구대상인 사유대지의 매수비용(약11조 추정)의 중앙지원관련 이견
(건교부-행자부-예산처)

⇒ 관계부처간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04.2월까지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정하고, 04년 상반기중 구체적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

③ 수도권규제 합리화 관련

○ 재경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국기업, 대기업·중소기업간 차별규제를 철폐하고, 특히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산자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

* 삼성전자 공장(화성, 기흥), 쌍용자동차 공장(평택) 증설 관련 사항이 현안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에서 규제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후 추진

Ⅲ. 평가와 향후과제

□ 참여정부 첫 해인 금년도에는 정부내 이견조정과 관련하여 정책조정의 제도화와 함께 조정과제 78건중 66건(84.6%)을 종결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보완노력을 필요로 하는 점도 있었음

- ① 사전협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시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공개함으로써 정책혼선으로 언론에 비치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사례
- ② 조정과정에서 부처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수하여 합의가 지연되는 등 부처이기주의로 비치는 사례
- ③ 조정이후에도 합의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국회 등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
- ④ 정부주요정책과 관련된 사항 또는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내 협의절차 없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사례

□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 변화진단에 포함하여 조정과제에 대한 부처간 협력도를 진단하고 있으며

- 정부업무평가지 기관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부처간 협력도를 반영해 나갈 계획

□ 앞으로 부처간 협력이 더욱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조정 시스템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정책조정과 조정과제 관리에 만전

<붙임> 調整中인 課題 主要內容 및 處理計劃

1. 연내에 종결할 과제 (5건)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이견내용

- 정통부 : 전기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 금지규제와 관련하여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주장
- 공정위 :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만 정통부에서 규제할 것을 주장

○ 현재상황

- 정통부에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국무조정실 조정안을 중심으로 협의중

○ 마무리 계획

- 금주중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급) 조정회의를 통해 종결 추진

② 서해 어로한계선 이북어장의 어선조업통제

○ 이견내용

- 국방부 : 민간어선에 대한 통제는 해경에서 담당하고, 해군은 軍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해수부, 해경 : 무력충돌 가능성, 해경의 정보 및 장비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국방부에서 담당

○ 현재상황

- 해수부의 조정신청(03.11.10)에 따라 국무조정실 실무조정중

○ 마무리 계획

- 금주중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안을 마련, 연내 합의 유도

③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 이견내용

- 산자부 : 전자문서유통의 안전성 등을 위해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지정제 도입
- 정통부 : 전자문서보관업은 민간자율시장영역으로 인위적 지정제 도입에 반대

○ 현재상황

- 규제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제위의 의결에 따르기로 합의
- 국무조정실에서 실무조정 진행중

○ 마무리 계획

- 금주중 규제개혁위원회(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결론 또는 국무조정실(규제개혁조정관실) 주관 조정회의를 통해 종결 추진

④ 자격기본법 개정

○ 이견내용

- 교육부 : 자격체제 도입 주장
- 노동부 : 자격체제 도입에 신중

○ 현재상황

- 교육부에서 수차례 당사자 조정을 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총리실의 조정을 신청(03.11.28)
- 국무조정실에서 1차 실무조정(12.3) 실시

○ 마무리 계획

- 금주중 국무조정실에서 실무조정을 실시하고, 미합의시 12월중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 상정 결론

5] 우체국 금융개편

○ 이견내용

- 재경부, 금감위 : 우체국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장, 예보료 및 법인세 미납부 등 우체국 특혜 축소 필요성 제기
- 정통부 : 단기간내 추진은 어려움

○ 현재상황

- 정통부에 관계부처·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우체국 금융발전T/F를 구성하여 4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개편방안 합의도출중

○ 마무리 계획

- 12월중 5차 T/F 논의를 거쳐 발전방안 마련 예정
- 발전방안 마련이 지연될 경우 12월 마지막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 상정

2. 정부조직 기능개편과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과제 (4건)

1] 해외문화홍보원 일원화

○ 이견내용

- 홍보처 : 종합적·전략적 업무추진을 위해 홍보처로 일원화
- 문광부 : 정부·민간연계 홍보가 필요하므로 문광부로 일원화
- 외교부 : 통합하여 재외공관 소속으로 일원화

○ 현재상황

-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회의, 청와대 협의 등을 거쳐 일원화 방안을 마련 → 정부혁신위로 이관(03.12.2)

○ 마무리 계획

- 총리실 차원의 조정은 일단락. 정부혁신위의 논의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조정 실시

② 소비자보호원 관할권

○ 이견내용

- 공정위 :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공정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
- 재정부 : 소비자정책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현행대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

○ 현재상황

- 공정위에서 인수위 보고시 이관문제를 제기했으나 정부혁신위
에서 논의키로 결정(03.1)
- 현재 진행사항은 없음

○ 마무리 계획

- 12월중 국무조정실에서 입장을 정리, 정부혁신위로 이관하여
논의토록 조치 예정

③ 유아교육·보육행정체제 정비

○ 이견내용

- 교육부 :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교육복지 중심의 일원화
체제로 전환 필요
- 복지부, 여성부 : 유치원은 유아조기교육만 수행, 보육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제공토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 현재상황

-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다수의 의원입법안 국회제출 등으로
그동안 논의의 진전이 없었음
- 최근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발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조정을
추진중

* 관련 의원입법

▲ 교육위 유아교육법 제정안(이재정 의원안(01.12), 김정숙 의원안(03.4))

- 이재정 의원안, 김정숙 의원안 : 별도의 유아교육법 제정
- 김정숙 의원안 : 유아학교(보육기능 포함) 도입, 사립유아학교 경비보조

▲ 복지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김홍신 의원안(02.3))

- 김홍신 의원안 : 영유아보육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우선 적용

○ 마무리 계획

- 12월중 국무조정실에서 입장을 정리, 정부혁신위로 이관하여 논의토록 조치 예정

④ 국립현충원 관리권 관련

○ 이견내용

- 보훈처 :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등이 안장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
- 국방부 : 안장자의 94% 이상이 국방부 소속이었던 자이며, 관리의 효율성, 의전행사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

○ 현재상황

- 실무조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이견 지속

○ 마무리 계획

- 12월중 국무조정실에서 입장을 정리, 정부혁신위로 이관하여 논의토록 조치 예정

3. 처리방침을 속히 결정해야 할 과제 (3건)

① 스크린쿼터 축소 관련

○ 이견내용

- 재경부, 외교부 :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상승(48%) 등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므로 BIT협상의 진전을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필요
- 문광부 : 문화는 교역대상이 될 수 없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현행(146일) 유지는 필수적

○ 현재상황

- 국조실 주재 관계부처 간담회, 청와대 주재 관계자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마무리 계획

- 필요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등에서 논의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 이견내용

- 건교부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매수청구대상인 사유대지의 매수비용(약11조 추정)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 자구노력 선행후 중앙지원 필요
- 행자부 : 중앙지원 절실
- 예산처 : 지자체가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정한 사안에 대해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곤란

○ 현재상황

- 건교부 T/F에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 제출(03.10)후 실무조정이 진행중이나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연내 마무리는 어려울 전망

○ 마무리 계획

- 04.2월까지 정책방향 확정, 04. 상반기중 구체적 해소방안 마련

③ 수도권규제 합리화 관련

○ 이견내용

- 재정부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국기업, 대·중소기업간 차별규제를 철폐하고,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조속히 추진
- 산자부 :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 현재상황

- 경제정책조정회의시(03.7) 국가균형발전위의 논의결과를 고려하여 추진키로 함

○ 마무리 계획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에 설치된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에서 규제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후 추진

참 고 자 료

3. 주무간사회의 운영실적

I. 주무부처 간사회의 운영

1] 신설 배경

○ 정책조정 및 갈등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관리 필요

- 정책조정 필요사항 정기점검체제를 구축, 사각지대 방지
 - 부처간 이견으로 추진상 어려움을 겪는 주요정책과제, 관계부처간 공동대처 할 필요가 있는 갈등과제 등의 추진 상황 점검·대처
- * 가칭 ‘정책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 추진중

○ 계기별 정부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

- 분야별로 각종 정책의 추진상황을 확인·점검·독려하는 범정부적인 관리체계 마련
- 국정운영기조, 국정 주요상황에 대한 정보교환 및 공동대응
 - * 총체적 국정운영 상황 점검, 추석대책 종합, 국감대책 등

⇒ 4대분야별 장관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조정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4대분야 주무부처 간사회의』 구성·운영

- 종전 국무조정실장 주재 주무차관회의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 조정관 주재 주무부처 간사회의로 변경·운영(03.8.국무회의 보고)

<참고 : 4대 분야별 장관회의 >

- ▲ 경제분야 : 재경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경제장관간담회)
- ▲ 교육인적자원분야 : 교육부 (인적자원개발회의)
- ▲ 통일외교안보분야 : 통일부·NSC (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
- ▲ 사회분야 : 행자부 (사회관계장관회의)

② 구성·운영계획

□ 구성

-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주재)
- 재정부 차관보, 교육부 차관보, 행자부 차관보, 통일부 기획관리실장,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
 - * 간사 :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
 - *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부처 1급 참석

□ 기능

- 4대 분야별 장관회의 운영 지원
- 부처간 협조·지원, 정책조정이 필요한 과제 추진 협의
- 부처별 주요정책과제 집행력 제고

□ 회의 운영

- 매월 1,3주 수요일 15:00 (원칙)
- 안전은 국무조정실이 주무부처와 협의·결정
 - 분야별 정책조정 추진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회의개최시 마다 업데이트)
 - * 주요조정과제를 유형별로 분류, 안전화 하여 처리방향 논의
 - 각종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독려
 - 수시 대두되는 주요 현안사항 처리방향
 - 기타 주무부처가 협의를 요청하는 안전

II. 주무부처 간사회의 운영실적

<주무 간사회의>

회 차	일 자	안 건
1차	8.20(수)	1. 주무부처 간사회의 운영계획 및 분야별 장관회의 활성화 방안(국조실) 2. 정책조정과제 관리 계획(국조실) (1) 분야별 조정필요 과제 3. 국정운영에 대한 총체적 점검 관련(국조실) 4. 기타 동향 (1) 정부합동점검활동, 추석대비 정부종합대책 수립
2차	9.3(수)	1. 조정필요과제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국조실) 2. 2003년도 국정감사 대비계획(국조실) 3. 정기국회 통과필요법안 처리계획(국조실) 4. 국정운영 및 주요정책과제 종합점검계획
3차	9.17(수)	1. 분야별 조정실적 및 계획 (1) 조정과제 발굴 및 변동사항 (국조실) (2) 지난 2주간 실적 및 향후계획(공통) (3) 입법 관련 부처간 이견사항 처리대책(공통) ① 정기국회중 정부입법이 필요한 사항중 부처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법안 처리대책 ② 의원입법중 부처간 이견의 조정이 필요한 법안 처리대책 2. 정부업무조정절차및조정업무운영에관한규정(안) (국조실)
4차	10.1(수)	1. 조정실적 및 향후계획 (1) 조정과제 관리 (국조실) ① 조정과제 발굴 및 변동현황 ② 총리훈령 제정 추진현황 및 Digital 청와대와의 연계방안 ③ 입법관련 부처간 이견 조정 관련 검토 (2) 지난 2주간 분야별 조정실적 및 향후계획(공통) 2. 갈등해결시스템 제도화 방안 (국조실) 3. 대통령의 당적포기에 따른 정부대책 (국조실)

5차	10.15(수)	<p>1. 조정과제 관리 (국조실)</p> <p>(1) 조정과제 발굴 및 변동현황</p> <p>(2) 총리훈령 제정 및 Digital 청와대와의 연계에 따른 협조사항</p> <p>2. 지난 2주간 분야별 조정실적 및 향후계획(공통)</p>
6차	10.29(수)	<p>1. 조정과제 관리 (국조실)</p> <p>(1) 조정과제 발굴 및 변동현황</p> <p>(2) 총리훈령 시행 계획</p> <p>2. 분야별 조정상황 및 분야별 장관회의 운영 평가 (공통)</p> <p>3. 당면국정운영 세부추진과제 점검 관련 (국조실)</p>
7차	11.12(수)	<p>1. 조정과제 관리 관련(국조실)</p> <p>2. 조정실적 및 향후계획과 당면국정운영 세부추진과제 점검결과 (공통)</p> <p>3. 부처간 미합의 사항 의원입법 추진 관련 대책 (국조실)</p> <p>4. 금년도 국정운영 마무리 추진방향 (국조실)</p>
8차	11.26(수)	<p>1. 조정과제 관련(국조실)</p> <p>(1) 조정과제 발굴 및 변동현황</p> <p>(2) 준조정과제(의원입법 관련 부처간 이견) 추진상황</p> <p>(3) 조정과제관리시스템 OPEN 관련 협조사항</p> <p>2. 분야별 조정실적 및 계획 (공통)</p> <p>(1) 소관분야의 지난 2주간 조정실적 및 계획</p> <p>(2) 소관분야 준조정과제 추진현황 점검결과</p> <p>3. 조정과제 마무리 및 평가 관련 (국조실)</p> <p>(1) 조정과제 마무리 계획 국무회의 보고 관련 협조사항</p> <p>(2) 부처간 업무협력도 평가관련 협조사항</p> <p>4. 국회제출 법안 처리상황 및 조치필요사항 (국조실)</p>
9차	12.10(수)	<p>1. 조정과제 관련</p> <p>(1)조정과제 발굴 및 변동현황(국조실)</p> <p>(2)분야별 조정실적 및 계획(공통)</p> <p>2. 내년도 연두업무보고 관련(국조실)</p>
10차	12.24(수)	<p>1. 조정과제 관리 관련(국조실)</p> <p>2. 분야별 조정실적 및 향후계획(공통)</p> <p>3. 내년도 연두업무보고 관련(국조실)</p> <p>4. 금년도 주무간사회의 운영성과 및 내년도 운영계획(국조실)</p>

참 고 자 료

4. 사회갈등과제 관련

금년도 사회갈등해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2003. 12. 26

국무조정실

- 목 차 -

I. 대내외 여건과 정부의 대응	1
1. 사회갈등의 성격과 여건변화 진단	1
2. 정부의 대응체제 및 추진전략	2
II. 사회갈등과제 현황 및 추진성과	3
1. 추진성과 개관	3
2. 분야별 추진성과와 계획	4
① 완료과제	4
② 일단락되거나 처리방침을 정한 과제	6
③ 연내 처리방침을 확정할 과제	10
④ 해결을 지속추진중인 과제	11
III. 향후과제	14

I. 대내외 여건과 정부의 대응

1. 사회갈등의 성격과 여건변화 진단

- 탈권위주의적인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 욕구와 사회적인 갈등이 분출하는 등 사회갈등 해결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
 - 금년 상반기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철도노조 파업, NEIS 시행 등 과거 정부부터 누적되어 왔던 각종 문제들이 갈등현안으로 부각되었으며
 - 금년 하반기에는 부안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선정,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구간에 대한 공론조사 실시 문제 등 주요국책사업과 관련된 사안들이 현안으로 제기되었음

- 참여정부에서 사회갈등 문제가 부각된 것은 사회갈등사안에 대해 정부의 초기대응이 다소 미흡하여 확대된 측면이 있지만,
 - 사회갈등이 質적으로 복잡화(현안의 융합과 참여자의 증첩 등)되고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어 해결의 어려움이 가중된 점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2. 정부의 대응체제 및 추진전략

- ◇ 「대화과 타협」, 「법과 원칙」의 기초하에 범정부적으로 대처
- ◇ 지난 5월 이후에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

□ 1단계 : 주관부처 중심의 갈등해결 추진

- 갈등문제의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관계집단, 주민 등과의 갈등해결을 추진하되,
-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실에서 해결 추진

□ 2단계 :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한 갈등해결 추진

- 사회갈등이 깊어진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현안과 갈등해결 추진
 - 매주 2회씩 개최하며 현안을 진단하고 적극 대응
 -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노도조 파업, 불법체류자 대책, 경인운하 건설, 경부고속철도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 재검토, NEIS, 부안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관련 사항 등

향후 보완필요사항

종합적인 갈등해결시스템 구축 추진

증가추세에 있는 사회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갈등해결연구팀(청와대, 총리실, 관계부처, 관계전문가 참여)을 구성하였으며(03.10),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제도화된 갈등해결시스템에 의해 대응

Ⅱ. 사회갈등과제 현황 및 추진성과

1. 추진성과 개관

- 현안이 되고 있는 사회갈등과제 24개를 선정(03.3)하여 중점관리
- 24개 과제중 17개 과제가 완료 또는 일단락 되었으며 앞으로 NEIS, FTA 지원 농업대책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의 방침이 연내에 결정될 경우 중요사안은 거의 마무리

추진단계	과 제 명	비고
완료과제 (6)	1. 주5일 근무제 도입	정부의 대책 확정 또는 법안의 국회통과로 후속조치를 진행중인 사항 등 갈등이 해결된 과제
	2.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3. 주공·토공 통합	
	4. 건강보험 재정통합	
	5. 의약분업제도 보완 (대체조제 활성화)	
	6. 철도산업 구조개혁	
일단락 되거나 처리방침을 정한 과제 (11)	7.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구간 건설	정부의 처리방침이 확정되었거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현시점에서 해결할 일은 일단락된 과제
	8. 경인운하 건설	
	9. 호남고속철 중부권 분기역 선정	
	10.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11.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12. 상장주식선물 이관 및 증권선물시장 개편	
	13. WTO/DDA 교육서비스 협상	
	14. 소각장 건설	
	15. 불법체류 외국인 처리대책	
	16. 공무원노조 허용	
	1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구간 건설	
연내 마무리할 과제 (2)	18. NEIS 구축	금년중 처리방침을 확정 하거나 완료할 과제
	19. 한·칠레 FTA 농업분야 대책 추진	
해결을 지속추진중인 과제 (5)	20. 퇴직연금제도 도입	갈등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 할 과제
	21. 평택항 및 부산신항 항만명칭 변경	
	22. 한탄강댐 건설	
	23.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립	
	24.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2. 분야별 추진성과와 계획

① 완료과제(6개)

① 주5일 근무제 도입

- 근로기준법 개정(03.8.29)을 통해 04.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기로 함
-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03.12.2)을 완료하고 시행 대비중

⇒ 국무조정실에 기획단을 설치(03.9)하여 후속대책 관련 각 부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종합조정

②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03.8.16)을 통해 04.8.17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기로 함
- 현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12.6~12.26)중

⇒ 하위법령 정비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조실장)'를 구성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결정 등 고용허가제 시행에 대비할 예정

③ 주공·토공 통합

-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양 공사 노조와의 갈등이 있었으나 인수위 논의, '토공·주공통합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통합추진을 중단하고, 양공사의 기능을 조정기로 결정(03.5.6)

- * 주택공사 : 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공급, 중소규모 택지개발 담당
- * 토지공사 : 산업단지, 신행정수도, 경제특구, 대북사업, 중대규모 택지개발 담당

- 현재 兩공사 자체적으로 경영혁신계획을 수립(03.7), 시행중

- * 주택공사 : 제2창사 기획팀(03.8) 운영중, 기획기능 확대 및 연구기능 재정립
- * 토지공사 : 인사채신대책 및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대책 시행중

④ 건강보험 재정통합

- 복지부의 지역건보와 직장건보 통합추진에 한나라당, 한국노총, 공단노조 등의 반발이 있었으나 건보재정 통합 완료(03.7.1)

⇒ 지역가입자의 소득과약을 제고 등 형평부과체계 확립을 위한 보완 대책 지속 추진 필요

⑤ 의약분업제도 보완

-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인정품목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생동성 인정품목의 약가 산정시 우대조치(03.1) 등으로 업계 참여 확대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업계의 적극적 참여로 생동성 인정품목이 01년 185품목, 02년 415품목에서 03년 828품목으로 확대

* 성분별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을 02년 52개성분에서 03년 96개 성분으로 확대

⇒ 의약품 허가시 생동성시험 자료제출을 의무화(04.7)하고, 2007년부터 약효 재평가를 통하여 생동성 미인정 품목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킬 예정

⑥ 철도산업 구조개혁

- 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 철도시설공단법 제정(03.7.29)

- 철도 운영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법안 처리를 위해 철도청 직원 연금대책 마련(03.10.31,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한국철도공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12.18)

⇒ 철도시설공단(04.1) 및 철도공사 설립(05.1)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철도 노조 설득작업 지속 추진

② 일단락되거나 처리방침을 정한 과제(11개)

⑦ 경부고속철 천성산, 금정산 구간 공사 관련

-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03.4)하여 검토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대안노선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기존 노선대로 추진하기로 정부방침을 확정(03.9.19,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금정산 구간은 03.11.3 재착공, 천성산 구간도 03.11.26 착공

- 현재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진행중

* 원고 : 도룡농외 11, 내원사 외 1 / 1차심문(11.28), 2차심문(12.26예정)

⇒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전문변호사 및 분야별 전문가 선임 등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불교계 및 환경단체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

⑧ 경인운하 건설 관련

- 굴포천 방수로와 제방도로는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경제성 및 사업내용을 재검토후 추진토록 함(03.9.19,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현재 방수로 및 제방도로 설계작업중

⇒ 방수로 및 제방도로는 내년 상반기중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

⑨ 호남고속철 분기역 선정

- 호남고속철 중부권 분기역(대전, 천안, 오송지역 등 유치 희망)은 04년도 하반기 행정수도 입지선정과 연계하여 처리하기로 결정

⇒ 우선 분기역과 관계없는 구간에 대해 04년중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행정수도 입지선정후 기본계획에 분기역 추가 반영 예정

⑩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 추진경과

- 환경단체, 종교인 등은 '3보1배' 행사(03.3-03.5)
- 환경단체의 행정소송(매립면허 효력정지) 및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방조제 공사의 집행정지를 결정(03.7.15)**

○ 현재상황

- 증인 추가신청, 변호인단 보장 등 소송수행중
 - * 가처분 항고심의 결정은 금년중, 본안소송은 04년 상반기에 최종 판결할 것으로 전망되며, 항고심 결정 결과에 따른 정부대응방안 마련 예정
- 방조제 내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중(03.11-04.12)

⇒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내년말 완료예정인 토지이용계획 용역을 가급적 조기에 완료

- * 용역을 통해 전북주민과 지역발전에 가장 유리하고,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 관리

⑪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확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03.10.31)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계류중

⇒ 244회 회기중 개정법안 국회통과를 위해 4당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입법을 지원하고, 법안의 국회통과에 대비 후속조치(하위법령 정비,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마련 철저

⑫ 상장주식선물 이관 및 증권·선물시장 운영체제 개편

-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현행 3개거래소를 완전통합하는 1단계 개편방안을 확정(03.8)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안**(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정안 등)을 **국회 제출**(03.11)
 - * 청산, 결제기능 개편문제는 향후 2단계 개편방안에 포함하여 해결할 예정
- 현재 관련 3법이 본회의 통과 또는 본회의 상정 대기중
 - * 선물거래법 개정안은 12.22일 본회의 통과
 - * 증권거래법 개정안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정안은 본회의 상정 대기중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개설(04.1월 예정) 등 차질없이 준비

⑬ WTO/DDA 교육서비스 협상

- 교육서비스 1차 양허안을 WTO에 제출(03.3) 하였으며, 상대국과 협상 진행중으로 현재 사회적 갈등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음
 - * 양허안의 주요내용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부문은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 교육은 일부에 대해서만 현행 국내법상 제한 유지
 - 고등교육 : 비영리법인만 허용, 수도권지역 신설 제한, 의료인 및 교원 양성 제한 등
 - 성인교육 : 학원의 수강료 제한 등
- 현재 우리가 양허 요청을 하였거나(11개국) 양허 요청을 받은 상대국(10개국)과 양자협상 진행중
 - * 1차 양허안 제출 이후 3차례(03.5월, 7월, 10월)에 걸쳐 9개국과 가진 양자협상에서 구체적인 쟁점은 부각되지 않고 있음

⇒ 향후 협상시(04년 2,5,7,10,12월 예정) 1차 양허안 수준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교육서비스 협상에 대한 홍보 강화 예정

⑭ 불법체류 외국인 처리대책

- 불법체류자 합법화 및 출국대책을 확정(03.8)하였고, 합법화 신청기간 마감후 단속 개시(03.11.17)
- 합법화 신청자 187천명중 185천명 합법화 조치 완료
 - 03.9.1이후 총 30천여명 출국(자진출국 29천명, 강제출국 1300명)

⇒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 및 강제퇴거 조치 예정

⑮ 소각장 건설추진

- 91년이후 전국적으로 건설을 추진중인 58개소중 44개소는 정상추진, 14개소는 사업이 예상보다 지연
- 2003년중 10개소는 입지공개모집방식 도입, 주민설득 등을 통하여 대부분의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 관리

* 다만 경북 경주시, 충남 계룡시, 충남 서산시, 강원 속초시 등 4개 지역은 주민반대 및 소송진행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추진이 지연되는 4개소의 향후 해결대책 강구

- ▲ 경북 경주시: 주민설득 및 홍보강화,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입지고시 완료(03.12.11). 내년중 착공 예정
- ▲ 충남 계룡시: 2순위 사업자의 소송제기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법원판결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예정
- ▲ 충남 서산시: 주민의 반대에 대해 친환경적 공법 도입 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여 공감대를 조성하고 사업 추진 예정
- ▲ 강원 속초시: 인근 양양군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협의가 지연되어 중앙환경분쟁조정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내년중 사업추진 예정

⑯ 공무원노조 허용 문제

- 공무원노조 허용방침을 정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03.10)하였으나, 공무원단체 등과 정부안에 대한 보다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일시 보류(03.11)
- 현재 전공노 등을 대상으로 설득작업 진행중

⇒ 공무원단체 및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후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

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구간 건설

- 대통령님의 해인사 방문(12.22)에 이어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당초 노선대로 공사재개 방침을 확정·발표(12.24)
- 불교계가 요구한 역사문화환경 훼손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준비
 - * 용도지구중 종교문화보존지구 신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개정), 전통사찰의 역사문화적 가치 및 수행환경 보호노력 의무화(전통사찰보전법 개정), 전통사찰보존법 적용지구내 각종 개발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대상지역 추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

⇒ 역사문화환경 훼손방지 제도개선 대책 추진 및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③ 연내 처리방침을 확정할 과제 (2개)

⑱ NEIS 구축 관련

-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설치·운영 (03.7월 이후 7회 개최)하여 운영방향에 대해 합의도출중
- 제7차회의(12.15)에서 시스템 구축 기본방향 결정
 - * NEIS의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의 DB는 기존의 NEIS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되 이를 시·도단위로 모아 집중 관리
 - * 학교장의 정보 수집, 관리 및 기술적인 관리권한을 보장하며 정보인권 향상을 위해 중앙과 각 시·도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치 운영
- 세부사항은 분과합동회의의 논의를 거쳐 제8차회의(12.30)에서 결정

⇒ NEIS 운영방향에 대하여 연내 최종방침 확정

⑱ 한-칠레 FTA 농업분야 대책

- 농어업인지원 4대 특별법 국회 제출 완료, 중장기 농어촌 투·융자 계획 발표(03.11.11) 등 정부대책 마련

* 4대특별법 : FTA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대부분의 농민단체는 정부대책을 수용하고 비준에 동의하고 있으나 전농 등 일부단체에서는 반대
- 현재 4개법안중 부채경감특별법, 삶의질향상특별법은 법사위 계류중이며
 - FTA지원특별법은 농해수위 상정 계류중
 - 농특세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12.22)

⇒ 한·칠레 FTA 비준안과 4대 특별법을 연내에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하기로 총리주재 4당 정책협의회에서 합의(12.10)하였으며 연내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

④ 해결을 지속추진중인 과제 (5개)

⑳ 퇴직연금제도 도입

-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03.9.24-03.10.14) 실시
- 입법예고안에 대해 노동계는 전 사업장 적용확대, 확정급여형만 도입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적용확대 반대, 확정기여형 도입을 주장하며 갈등이 있어 현재 이에 대한 이견조율중

⇒ 노동부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추가 검토·조율중이며, 추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정부입장을 조속히 확정 한후 내년 상반기중 입법 추진

㉑ 평택항 및 부산신항 항만명칭 문제

○ 쟁점

- 평택항의 경우

- * 당진군은 '평택·당진항'으로 명칭변경을 주장
- * 평택시는 먼저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해상경계 소송의 취하를 요구 (당진군은 해상경계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주장)

- 부산신항의 경우

- * 경남도는 '부산·진해신항'으로 명칭변경을 주장
- * 부산시는 부산항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부산신항'을 주장

○ 해수부에서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계 자치단체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평택항은 현재소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부산신항은 부두개장(06.1) 이전에 관련 지자체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항만정책심의회' 등을 통하여 최종결정할 예정

㉒ 한탄강댐 건설

○ 정부의 한탄강댐 건설 추진에 대해 상류지역(철원)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댐 건설후 배수지체 및 안개발생 등 피해를 우려하여 반대

○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03.7.28),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준비중

- * 이용삼(민주당, 철원·화천·양구) 등 190명 국회의원이 댐 건설 백지화 요구(03.12.12)
- * 포천지역 수몰주민은 기본계획 조속 고시 요망

⇒ 댐 건설 반대측에 대한 추가적인 주민 설득·홍보후 기본계획 고시 예정

- * 철원지역의 숙원사업(경원선 연결방안 등)에 대한 지원 등과 연계

㉓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립

○ 추진경과 및 진행상황

- 부안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4차례 회의를 진행(03.10.24-11.14)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보완방안 발표(03.12.10)

⇒ 주민 유치청원, 예비신청 및 찬반토론, 주민투표, 본신청 등 추가
공모 공고안을 마련하고, 신규 유치신청지 발굴 적극 추진

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입법 추진에 대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 존재

- * 노동계 : 대상업무 축소, 파견기간 제한,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등 주장
- * 경영계 : 대상업무 확대, 파견기간 제한 완화 등 주장

○ 추진경과 및 현재상황

- 03.7.25일 노사정위 논의결과가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노동부에서 정부안을 마련하여 부처협의중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에서 비정규직 실태조사(03.4월-10월)를 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와 각 부처의 자체대책을 토대로 종합대책 마련중

⇒ ①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입법예고 실시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②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대책은 조속히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방침 확정 예정

Ⅲ. 향후 과제

관리되고 있는 갈등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노력과 함께 갈등해결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1 갈등해결 노력 및 과제관리 강화

- 완료 및 일단락된 과제는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해나가고,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대응
- 연내 마무리할 과제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하여 조속히 처리방침을 확정
- 해결을 추진중인 과제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통해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일단락
- 새로운 갈등사안은 즉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2 갈등해결시스템 제도화

- 갈등해결연구팀에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중(03.10~)에 있으며 04.1월중 갈등해결시스템 구축시안 마련
 - ▲ 한국사회갈등의 특징과 원인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갈등해결방향 모색(문화적 측면 포함)
 - ▲ 갈등유형별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매뉴얼 및 활용방안 제시
 -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 ▲ 갈등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마련
- 내년 상반기중 갈등해결시스템 구축방안을 확정, 단기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법·제도 정비 등 시스템의 제도화는 연내 적극 추진

社會葛藤 24個 課題 現況

03. 12

國 務 調 整 室

- 목 차 -

< 완료 (6) >

1. 주5일 근무제 도입	1
2.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2
3. 주공·토공 통합	3
4. 건강보험 재정통합	4
5. 의약분업제도 개선	5
6. 철도산업 구조개혁 추진	6

< 일 단 락(11) >

7. 경부고속철 천성산·금정산 구간 노선결정	7
8. 경인운하 건설	8
9. 호남고속철 분기역 선정	9
10. 새만금간척사업 추진	10
11.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11
12. 상장주식선물시장 이관	12
13. WTO/DDA 교육서비스협상	13
14. 소각장 건설 추진	14
15. 불법체류 외국인 처리대책	16
16. 공무원노조 허용	17
17.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구간 건설	18

< 연 내 마 무 리(2) >

18. NEIS 구축 관련	19
19. 한칠레 FTA 농업대책	20

< 해 결 진 행 중(5) >

20. 퇴직연금제도 도입	21
21. 항만명칭 및 구역분리 지정	22
22. 한탄강댐 건설	23
23.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립	24
24.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25

1. 주5일 근무제 도입

□ 추진단계 : 완료

-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완료
- 범정부차원의 세부후속대책 마련 추진중

□ 추진과정 및 결과

- 장시간 근로로 삶의 질이 낮고, 생산성 제고에도 한계

〈2001년도 OECD 주요국 연간근로시간〉

한국	호주	체코	스페인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2,447	1,837	2,000	1,816	1,467	1,836	1,603	1,711	1,821

※ '02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410시간, 주당 근로시간은 46.2시간(10인 이상)

- 근로기준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03.8.29)

- 04.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단계적 실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03.12.2)

□ 참고 : 후속조치 추진

- 주5일근무제가 입법화되었으나 동제도가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국무회의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후속대책 추진 기본방향 보고('03.9.2)

- 주5일 근무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 관계부처에 T/F팀을 운영(노동부 등 6개부처)

- 국무조정실에 기획단을 설치, 각 부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 조정

- ※ 주요 후속 대책 : ①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②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 ③ 의료·공공부문 서비스 유지방안
- ④ 주5일 수업제 부작용 방지 방안
- ⑤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 등

2.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 추진단계 : 완료

-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확정하고, 관련 법률제정 완료
- '04.8월 고용허가제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중

□ 추진과정 및 결과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불법체류자 근절 등을 위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03.7.3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
 - *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실시

□ 참고 : 후속조치 추진

- 고용허가제 입법에 따른 후속대책의 차질없는 수행
 - '03.3.31 기준 국내 체류기간 4년미만 불법체류자 227천명에 대한 합법화 조치 시행(9.1~11.29)
 - ※ 187,498명에게 취업확인서 발급, 이중 184,199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추진중(12.1 부처협의 완료, 12.6~12.26 입법예고중)
 - 한국노동연구원의 기초 연구결과(11.15 완료)를 토대로 외국인력 도입업종·규모(안) 마련중
 - 법률시행('04.8) 전까지 하위법령 제정, 외국인력 도입업종·규모 확정, 국가간 양해각서 체결,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차질없이 준비
 -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근로감독 및 고용관리 실시(사업장 지도감독, 외국인근로자·사업주 교육 등)

3. 주공 · 토공 통합

□ 추진단계 : 완료

- 「주공 · 토공 통합추진위원회」 심의(5.2) 결과 양 공사를 통합하지 않고 각각의 기능을 조정기로 결정('03.5.6 건교부장관)

* 위원회 구성내역

- 위원장 : 건교부차관, 부위원장 : 건교부 차관보
- 위원(9명) : 건교부 기획관리실장, 토지국장, 주택도시국장, 기획예산처 재정개혁국장,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부사장, 민간 전문가 3인(권용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최병선교수, 이동성 교수)

□ 추진과정 및 결과

- 양 공사의 기능 조정 방향 확정(5.6)

- 주택공사 : 공공주택 건설 · 공급, 도시정비, 국민임대주택 건설 · 공급과 중소규모의 택지개발 등 담당
- 토지공사 : 산업단지개발, 신행정수도, 경제특구 개발, 대북사업, 중대규모의 택지개발 등을 담당

- 양 공사가 자체적인 경영혁신계획을 수립('03.7.10) · 시행 중

< 주택공사 >

- 기획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연구기능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역할 확대에 따른 경영전략을 마련
- 이를 위해 「제2창사 기획팀」을 신설 · 운영중('03.8)

< 토지공사 >

- 「경영혁신팀」을 구성('03.6)하여 인사채신대책 · 경영목표체계 개편 방안,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 대책 등을 수립 · 추진중

4. 건강보험 재정통합

□ 추진단계 : 완료

□ 추진과정 및 결과

○ 지난 20여년간 건강보험 분리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하에 건강보험 재정통합 결정

※ '98. 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 '99. 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03. 2월 복지부장관 직속의 「건강보험통합발전기획단」 (공동단장 차관·차홍봉 교수) 구성하여 통합준비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

○ 주요쟁점 또는 문제점

- 재정통합 입장 : 민주노총, 공단 지역노조, 건강연대, 농어민 단체

* 재정분리시 농어민, 노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연대성 약화, 통합시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관리운영비 최소화 도모

- 재정분리 입장 : 한나라당, 한국노총, 공단직장노조, 경총

* 소득과악이 낮은 자영업자와 근로자간 형평제고(재정통합시 직장인 부담증가), 보험료 조정 용이, 재정운영의 책임의식 제고 등

※ '99. 2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내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후 성영권 등 76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 ('00.6.29)

○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일원화 등 통합조직으로의 개편 완료('03.5.1)

○ 건강보험재정통합 완료('03.7.1)

5. 의약분업제도 개선(성분명처방제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

□ 추진단계 : 완료

- 약사법 개정 및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 수립 완료

□ 추진현황

- '00. 7월 의약분업 시행당시 의사의 성분명처방제와 제품명처방제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관행상 제품명처방을 주로 하게 됨에 따라 의약계가 반발하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장
- 의약계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의·약·정 합의('00.11)를 도출, 약사법에 반영기로 결정·약사법 개정('01.8.14)
 -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품목의 대체조제 절차를 반영, 사후통보제도 간소화
-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활성화 대책' 수립·시행('01.12)
 - 생동성 인정품목을 매년 400품목씩 확대
 - 생동성 인정 품목의 약가 산정시 우대 등 조치('03. 1부터)로 업계 참여 유도
 - 성분별 생동성시험 표준지침 매년 수립
- ※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활성화 대책' 시행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성과
 - 업계의 적극적 참여로 생동성 인정품목이 '01년 185품목, '02년 415품목에서 '03년 828품목으로 확대('06년에는 2,000품목으로 확대 예정)
 - 성분별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을 '02년 52개성분에서 '03년 96개성분으로 확대

□ 참고 : 후속조치

-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 사후관리
 - 의약품 허가시 생동성시험 자료제출 의무화('04. 7부터)
 - 약효재평가를 통하여 생동성 미인정 품목 단계적으로 퇴출('07. 1부터)

6.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

□ 추진단계 : 완료

- 철도청 직원의 연금문제 등 쟁점에 대한 정부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03.10.31,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한국철도공사법안이 12.8 건교위 통과

□ 추진현황

- 관계기관 및 노사간 협의(4.20)등을 거쳐 구조개혁방향으로 “**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 및 운영 공사화**” 결정
 - 철도시설 : 국가가 투자·소유, 집행기관으로 철도시설공단 설립
 - 철도운영 : 공기업(철도공사)체제로 전환
- 국회 및 언론·시민단체 등 Opinion Leader, 철도노조 등 각계 홍보를 통해 구조개혁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 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정·공포(7.29)**
- 철도운영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법(안) 처리를 위해 **철도청직원 연금대책 마련**
 -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10.31) 결과 공사화 이후 근무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기간이 20년이 되는 시점까지 공무원연금 가입을 허용, 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공무원연금 20년 한정가입 방안**’ 으로 결론
 - * 한국철도공사법안 부칙에 포함
- 한국철도공사법(안) 본회의 통과(12.18)

□ 향후대책

- 철도시설공단('04. 1) 및 철도공사 설립('05. 1)

7. 경부고속철 금정산·천성산 구간 노선결정

□ 추진단계 : 일단락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9.19)에서 기존노선으로 공사재개 결정

□ 추진과정 및 결과

- '02. 6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부산 신선건설공사 착공 후 대구~경주구간은 원활히 공사진행중이나,
 - 경주~부산 구간(금정산·천성산 구간 포함)은 불교계와 환경 단체의 요구로 '02. 7월 이후 공사 중단
- 「대안노선 및 기존노선 재검토위원회」('03.5.22~7.28)를 총리실에 구성
- 각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노선으로 공사재개 결정(9.19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금정산 구간(대우,두산) 공사 재착공(11.3), 천성산 구간(SK,현대) 착공(11.26)

□ 참고 : 후속조치

- 천성산터널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 원고 : 도롱뇽 외 11, 내원사 외 1
 - 1차 심문(11.28) 결과 현장검증 실시(12.15)
 - * 현장검증시(12.15) 참고인 현황
 - 지질분야 : 삼보기술단(이사) 추석연 박사
 - 식생분야 : 자연환경복원연구원(차장) 장인수 박사
 - 환경전반 :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수생 교수
 - 차기 심문일 : '03. 12. 26(금) 11:00
- 향후대책
 - 공사착공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문변호사 및 분야별 전문가 선임 등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불교계 및 환경단체를 지속적으로 설득

8. 경인운하 건설

□ 추진단계 : 일단락

□ 추진과정 및 결과

- 굴포천 유역(부평·부천 150만명)의 홍수방어시설인 방수로를 넓혀(80→100m) 운하로 겸용하는 민자사업

〈사업개요〉

총사업비 : 1조 8,429억원(정부 4,382억원), 사업구간 : 영종대교~행주대교(18km, 폭 100m), 주요시설 : 터미널 2개소(서울 56만평, 인천 86만평), 갑문 2개소(인천 3기, 서울 2기), 제방도로 15km

○ 추진경위

- '96. 10. 5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 '02.4~'03.2 경제성 재평가 실시(한국개발연구원)
 - 재평가 결과 논란 계속
- '03. 6. 30 굴포천 임시방수로사업 준공(폭 20m, 길이 14.2km)
- '03. 9. 19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시 사업추진 방침결정
 - 굴포천 방수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재검토 후 추진방안 강구

□ 참고 : 향후대책

- 굴포천유역의 시급한 홍수방지를 위해 방수로(폭 80m)와 제방도로를 국고사업으로 전환하여 우선 건설
 - 방수로 및 제방도로 설계중
 - 방수로 및 제방도로는 04년 상반기 설계완료, 04년 하반기 공사착수 예정

9.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 추진단계 : 일단락

- '04년 하반기 실행정수도 입지 선정 후 결정할 사항

□ 추진과정 및 결과

- 중부권 분기역(후보지 : 천안·오송·대전)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의회·주민들이 자기 지역 유치를 강력 주장
- 노선과 정차역, 건설기간, 사업비 등을 담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교통개발연구원 등, '01.5~'03.11)완료단계
 - ※ 용역 미준공 처리상태
- 중부권 분기역은 행정수도 입지선정('04 하반기)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
 - 우선 분기역과 관계없는 구간에 대해 기본계획(안) 수립 및 '04년 상반기중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 기예처장관) 의결 추진
 - 행정수도 입지 선정후 기본계획에 분기역 추가 반영

10.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 추진단계 : 일단락

- 행정소송 진행중
 - '01.8월 조경훈외 3,538인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효력정지 신청
 - '03.6월 최열 등 3인이 새만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재판부가 7.15 일 중단 결정, 농림부는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
 - ※ 7.18일 재판부에 질의하여 「보강·조경공사」는 허용받아 공사 추진중
- 향후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중
 - 용역기간 : '03.11~'04.12,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 공동연구

□ 추진현황

- 집단 우량농지(28천ha)와 수자원 확보 등을 위해 '91년 착수
 - '99~'01년까지 민관공동조사 등을 거쳐 정부방침 결정('01.5)
 - '03년까지 1조5,958억원을 지원하여 방조제공사 82% 추진
- 소송 승소를 위해 적극 대처
 - 변호인단 보강(2인:화우→13인:화우·태평양), 국내외 증인 5명 신청, 농림부 내 소송대책반 구성·운영과 관계부처간 공조체제 지속 유지
 - <가처분 항고심:서울고법(특별7부:이영애 부장판사)> 4차례 심문, 현장검증후 심문 종결
 - * 최종판결은 금년중에 판결할 것으로 전망
 - <본안 소송:서울행정법원(강영호 부장판사)> '03년 5차례 증인심문
 - * '04.1.30 피고측 증인(전북도 2명)을 심문할 계획으로 '04년 상반기중에는 최종판결할 것으로 전망

□ 주요쟁점 또는 문제점

- 환경단체는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전북주민은 사업의 조기 완공 희망
 - 환경단체는 종교인 등과 「3보1배」 행사('03.3.28~5.30)
 - 전북도는 '새만금완공촉구 200만서명운동', '새만금의 날(11.1)' 지정

□ 향후대책

- 항고심 결정 결과에 따라 정부대응방안 마련
 - 본안소송 대응에 총력, 방조제공사 계획대로 추진 등
- 내부토지이용계획이 전북주민에 이익과 지역발전에 가장 유리하며, 친환경적으로 수립되도록 지속적 용역관리

11.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추진

□ 추진단계 : 일단락

□ 추진현황

- 현행 저부담-고급여 구조 및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대책 추진
 -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0%로 인하하되, 국민 충격완화를 위해 '04~'07년간에는 55%로 조정
 - 보험료는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씩 인상하여 2030년에 15.9%로 고정 (현재 9%)
-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 전문조직 설치로 기금운용 관리체계를 확립
 - ※ 당정협의(7.18), 공청회 개최(8.19),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8.19)

□ 주요쟁점 또는 문제점

- 현 시점에서의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 <부처입장> 현 제도 유지시 '36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 '47년 적립기금 소진이 예상, 대책수립 필요
 - <반 대 측> 다음 재정추계년도인 2008년에 조정, 올해 처음 실시한 재정계산결과만을 토대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성급
- 연금재정에의 국고지원 문제
 - <부처입장> 국고지원은 기여에 따른 급부라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반함
 - <반 대 측> 부유세 등을 신설하여 GDP의 0.75% 정도인 4.5조원을 국고지원, 보험료율을 인하
- 국민연금 내·외의 형평성 문제(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신고소득 문제, 공무원·국민연금간) 등

□ 향후계획

- 정기국회에 제출(10.31)된 국민연금법개정법안 연내통과 추진

12. 상장주식선물 이관 및 증권·선물시장 운영체제 개편

□ 추진단계 : 일단락

- 유관기관 협의결과를 토대로 시장체제개편을 위한 관련법시
를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 추진 현황

-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현행 3개 거래소를 완전통합하기로 개편기본방안을 확정
(’03.5)
- 유관기관 협의, 금융발전심의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거래소 설립방안 등 1단계 개편방안을 확정(’03.8)
- 1단계 개편방안에 따른 관련법률 제·개정안(한국증권선물거래
소법 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03.11)
 - 선물거래법 개정안 12.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증권거래법 개정안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정안은 본회
의 상정 대기중

□ 주요 쟁점 또는 문제점

- 통합거래소 설립 등 주요내용과 관련한 대부분의 쟁점은 해
소되었으나, 증권예탁원 등 일부기관의 이견 존재
 - * 증권예탁원 : 현재 거래소와의 위탁계약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대금결제업무
를 예탁원의 고유업무로 법률에 명시해 줄 것을 주장

□ 향후 대책

- 유관기관등과 함께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를 위해 노력
- 청산·결제기능 개편문제는 향후 2단계 개편방안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

13. WTO/DDA 교육서비스 협상

□ 추진단계 : 일단락

□ 추진현황

- WTO DDA('01.11 출범) 서비스 협상일정에 따라 교육서비스 1차 양허(개방)안 제출('03.3월)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부문은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일부에 대해서만 현행 국내법상 제한 유지
 - * 비영리법인만 허용, 수도권지역 신설제한, 의료인, 교원양성 제한 등
- 현재 우리가 양허 요청을 하였거나(11개국) 양허 요청을 받은 상대국(10개국)과 양자협상 진행중(스위스 제네바)
 - 1차 양허안 제출 이후 총 3차례('03.5월, 7월, 10월)에 걸쳐 9개국과 가진 양자협상에서 일본과 호주가 우리 1차 양허안 상의 제한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구체적인 쟁점은 미부각)

□ 주요쟁점 또는 문제점

- 교육개방 여부 및 폭과 수준에 대한 합의형성에 곤란
 - 찬성 : 국내 교육의 질 제고 및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 반대 : 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교육상업화 방지
- 향후 협상시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할 경우 사회적 갈등 우려
 - 초·중등교육부문 양허와 학교법인제도 등과 같은 국내법상의 주요한 제한의 폐지가 향후 협상 쟁점으로 부각 가능성

□ 향후대책

- 향후 협상시 1차 양허안 수준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 지속적인 DDA 교육서비스 협상 홍보(설명) 활동 추진
 - * 「DDA 교육서비스협상」 홍보 책자 제작·배포('03.12월)

14. 소각장 건설추진

□ 추진단계 : 일단락

□ 추진현황

- 생활폐기물의 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소각시설 확충 중
 - '91년부터 '03.6 현재까지 59개 소각장 건설 완료, 58개소 건설 추진 중
 - 44개소는 정상추진, 14개소는 사업추진 지연
- 사업추진지연 14개소 중 '03. 11월 현재 10개 지역은 “입지공개모집”방식 도입, 주민협의 및 설득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여 추진에는 문제가 없음
 - 경북 경주시, 충남 계룡시, 충남 서산시, 강원 속초시 등 4개 지역은 주민반대 및 소송 진행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주요 쟁점 또는 문제점

- 인근 지자체와 협의 지연, 입지선정 절차 등에 대한 하자소송 제기 등으로 소각장 건설 추진에 차질 발생

□ 향후 대책

- 경북 경주시 천군동 폐기물매립장내(100톤/일, 300억원)
 - 다이옥신 발생 및 환경오염 우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반대운동으로 사업추진 지연
 - 도시쓰레기 처리의 심각성 홍보설명, 해외 소각장 견학을 통한 신뢰성 제고, 주민협의체 기금조성 및 주민복지사업 지원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 노력
 - '04.1~11 문화재시굴 및 실시설계, '04.12 착공예정

- 충남 계룡시 두마면 폐기물매립장내(25톤/일, 42억원)
 - 사업추진주체 미확정으로 공사지연
 - 2순위자(영엔지니어링)의 소송제기로 항소심 계류중(1심결과 계룡시 패소, '03.3)
 - 법원 판결 결과 반영 사업추진 예정(시기 미정)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폐기물매립장내(50톤/일, 165억원)
 - 소각장저지대책위 중심 대규모 집회, 민원 제기 등 강력 반대로 사업추진 지연
 - 주민과의 타협점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설명회 개최, 생활폐기물 고체연료화시설 등 친환경적 공법 도입 등을 통한 공감대 조성 노력
 - '03년 말 최적방안 결정, 사업추진 예정

- 강원 속초시 대포동 일대(50톤/일, 100억원)
 - 인근 지자체인 강원 양양군(강현면)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협의가 지연되어 중앙환경분쟁조정을 신청중('03.12.2)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9조제7항에 의거 입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인근 지자체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 필요
 - ※ 본 사업의 경우 그 거리가 1.65km
 - '04.7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고시 등 사업추진 예정

15. 불법체류 외국인 처리대책

□ 추진상황 : 일단락

- 불체자 합법화 조치후 단속 실시중(자진출국 유도 병행)

□ 추진현황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8.16)
- '03.3.31 기준 국내 체류기간 4년미만 불법체류자 227천명에 대한 합법화 조치 시행(9.1~11.29)
 - ※ 187,498명에게 취업확인서 발급, 이중 184,199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4년이상 불법체류자 등 120천명에 대한 단속 실시(11.17부터)
 - ※ 9.1~현재 불법체류자 30천명 출국

□ 주요쟁점 또는 문제점

- 4년이상 불법체류자 등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집단행동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출국유예 요구
- 불법체류자 단속인력 및 보호시설 등 부족

□ 향후대책

- 불체자 정책의 일관성·신뢰성 유지,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 향후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엄정한 불체자 단속 실시
- 불체자 단속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진출국 유도 노력을 병행
 - 자진출국자에 대한 입국규제 완화, 자진출국자를 외국인구직자 pool에 포함하는 방안, 취업관리제 확대를 통한 취업 배려 방안 등을 검토

16. 공무원 노조 허용

□ 추진단계 : 일단락

-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노동3권 보장을 주장하며 정부안 국회제출시 연가투쟁을 계획하는 등 반발
 - 이에 따라 공무원단체를 충분히 설득, 정부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입법 추진키로 하고 입법 보류

□ 추진현황

-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교원노조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03.3.19)
 - 관계부처회의 거쳐 입법방침 발표(5. 20), 관계부처 협의(6.12~6.21), 입법예고(6.23~7.12)를 거쳐 관계부처간 이견조정과 함께 법제처 심사완료(10.6)
- 일부 공무원 단체 등의 반발이 있어 당분간 입법추진 보류(03.11)

□ 주요쟁점 또는 문제점

- 일부 공무원단체(전국공무원노조)는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부안의 입법추진에 반대
 - ※ 온건성향의 공무원단체는 정부의 입법보류 방침에 반발, 노동부 등 항의 방문
- 시간을 갖고 공무원노조 집행부를 설득하더라도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입법 지연시 온건성향의 공무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대책

- 공무원단체 및 일선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후 입법 추진

1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 추진단계 : 일단락

□ 추진현황

- 2001. 6월 총 36.3km(사업비 2조 3,684억원)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의정부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01.11월 이후 공사 중단
 - ※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친 후 북한산국립공원내의 사패산 통과구간 4.6km 중 4km를 터널로 계획
- '03.4.14 불교계와 총리실에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하여 6. 5.까지 전체회의 6회, 현장조사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나 합의 무산
- '03.9.20, 11.13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에게 공론조사 참여 권유
- '03.11.8, 11.18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수행환경 및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 논의, 12.2일 국무회의 보
- 03.12.13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제도개선 추진대책 발표 및 불교계 전달(03.12.17)
- 대통령님의 해인사 방문(12.22)에 이어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초 노선대로 공사재개 방침을 확정·발표(12.24)

□ 주요쟁점 또는 문제점

-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실액 : 약 5천억원
(사업 시공사 546억, 사회적 손실 4,390억원)
- 사업비 충당을 위한 외자 1억달러 유치에 어려움 야기

□ 향후대책

- 불교계가 요구한 역사문화환경 훼손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

18.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관련

□ 추진단계 : 추진중→ 연내마무리

- NEIS 27개영역중 3개영역(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은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검토하기로 방침 결정('03.5)
 - 단, 고3은 NEIS 시행, 고2 이하는 3개 영역을 手記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S/A, C/S, NEIS 선택사용 가능
- 국무총리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라 전교조 등 교원단체 반발 진정('03.7)
 - 위원회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의중에 있으며 '03.12월말 건의안 제출 예정

□ 주요쟁점 또는 문제점

- 교육부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영역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현저히 많은 항목은 삭제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NEIS 체제로 시행할 것을 제시
- 전교조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영역은 NEIS에서 완전분리하여 학교단위의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과 차단된 독립형 방식으로 운영 주장
 - 교육부는 정보화의 효율성 상실, 과도한 예산 추가소요 등을 이유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

□ 향후대책

- 위원회에서 교육적·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내 마무리 추진

19. 한·칠레 FTA 농업분야 대책장구

□ 추진단계 : 일단락 → 연내마무리

- FTA지원특별법 국회상정(11.17) 등 4대지원법 제·개정안 국회제출 완료, 중·장기 농어촌 투·융자 계획 발표(11.11) 등 정부대책은 일단락

□ 추진현황

-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업지원대책 확정·발표(7.16)
 - 과수농가의 경쟁력 강화, 가격하락시 소득보전 등 7년간 1조원 규모 투융자계획(특별기금 8천억원+지방비 2천억원)
-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FTA지원특별법」 등 농업인 지원 4대특별법 제·개정 추진
 - * 4대지원법중 FTA특별법, 부채특별법, 복지특별법은 국회 계류중, 농특세법은 12.22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어촌 중·장기 투·융자 계획(10년간 119조원) 발표(11.11)

□ 주요쟁점 또는 문제점

- '03.2월 협정 공식서명 이후 농민단체의 반발로 FTA 비준이 지연
 - 대부분의 농민단체는 정부대책을 수용하고 비준에 동의하고 있으나, 전농 등 일부 과격단체들이 지속적인 반대 투쟁

□ 향후대책

- 국회, 농민단체를 적극 설득하여 비준안과 4대특별법이 동시에 통과되어 지원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함
 - 농민단체 추가 요구사항은 FTA비준안 통과를 전제로 수용
 - * 농민단체 추가요구 : FTA이행기금 증액(4,000억원), 상호금융·경영개선자금 금리(6.5%→3%), 정책자금(4%→3%), 농특세 연장(5년→10년)

20. 퇴직연금제도 도입

□ 추진단계 : 추진중

□ 추진현황

- 현행 퇴직금제도는 '61년에 도입되었으나, 직장이동성 증가, 중간정산제 확산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크게 약화
 -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근속자는 적용이 배제되어 법정복지제도가 형평성을 상실
- 따라서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
 - 개별 사업장별 연금전환 여부는 노사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유도(DB형, DC형 모두 허용)
 -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는 연금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업주의 기여는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 ※ 확정기여형(DC) : 사업주의 기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연금수준은 운영결과에 따라 달라짐
 - 사내유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 단계적 축소로 사외적립 유도 등
-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 추진(2007년부터)
 - ※ 사업주의 비용부담 증가 우려가 있으나 노후대책이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감안, 일정한 예고기간을 거쳐 사업주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조정

□ 주요쟁점 또는 문제점

- 퇴직연금제 입법예고(9.24~10.14)안에 재계·노동계 반대
 - 노동계는 전 사업장 적용확대, 확정급여형만 도입 등을 주장,
 - 경영계는 적용확대 반대, 확정기여형 도입 등을 주장

□ 향후대책

- 노동부에서 노사간 이견 조정·설득
- 필요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정부방침 확정 예정

21. 항만명칭 및 구역분리 지정요구

□ 추진단계 : 추진중

□ 추진현황

- 당진군 및 경남도에서 평택항 및 부산신항의 항만명칭을 각각 평택·당진항, 부산·진해신항으로 변경 요구
- 항만명칭 문제는 매립지 토지등록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임
 - 해수부(합동조사단)는 매립지 토지등록에 관한 현안해결(당진군의 현재소송 취하)을 전제로 평택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하고,
 - 부산신항은 지자체간 합의를 전제로 건설사업명을 부산·진해신항만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

□ 주요 쟁점 또는 문제점

- 당진측은 현재소의 해상경계 문제와 별개로 항만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평택측은 우선 해상경계분쟁 취하를 요구
- 경남도는 "부산·진해신항만"으로 명칭변경을 주장하고, 부산시는 부산항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부산신항"을 주장
 - ※ 동 갈등은 현재 사용중인 명칭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변경요구를 수용하거나 현행명칭 사용을 고수하는 경우 오히려 관련 지자체의 거센 반발 야기 우려

□ 향후대책

- 평택항은 현재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부산신항은 부두개장('06.1예정) 이전에 관련지자체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항만정책심의회 등을 통하여 최종 결정

22. 한탄강댐 건설

□ 추진단계 : 추진중

-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류지역주민에 대해 협의·설득중

□ 추진현황

- 임진강 대홍수('96, '98, '99)를 계기로 경기도 연천군에 한탄강댐을 건설키로 정부방침 확정 ('99.12. 청와대 수해방지대책 기획단)

<사업개요>

총사업비 9,750억원, 높이 85m, 길이 705m, 저수용량 311백만 m^3 , 홍수조절 305백만 m^3 , 용수공급 연간 128백만 m^3 의 홍수조절용 댐 건설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고('03.7.28)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준비중

□ 주요쟁점

- 지역주민 및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로 기본계획고시 등 사업추진 지연
 - ※ 지역주민(댐 상류지역인 강원도 철원지역 주민) 반대 내용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
 - 안개발생 등에 따른 환경 악영향
 - 댐 건설 후 배수지체로 인한 침수 우려
 - ※ 철원지역 주민과는 달리 포천지역 수몰주민은 기본계획 조속 고시 요망
- 이용삼 의원(민주당,철원·화천·양구) 등 190명 국회의원이 댐 건설 백지화 요구('03.12.12)

□ 향후대책

- 홍수조절용 댐이므로 상류지역 규제 및 배수지체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댐 주변지역 지원도 확대(매년 9→18억원)할 계획임을 지속 설득·홍보한 후, 기본계획 고시 및 보상착수
 - ※ 철원지역의 숙원사업(경원선 연결방안 등)에 대한 지원 등과 연계

23.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

□ 과제단계 : 추진중

□ 추진현황

- 부안군지원대책위(※위원장:국무조정실장)를 구성(7.18), 2차례 회의를 개최(7.30, 8.14)하여 부안군 지원사업 논의·추진중
- 국무총리와 부안대책위측과의 대화(9.29 및 10.3)를 통해 「부안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구성(10.16), 4차례 회의(10.24~11.14)를 하였으나, 주민투표 연내 실시 문제로 부안측이 대화결렬 선언(11.18)
-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입장 공식발표(11.24) 및 부안측과의 비공식 접촉 추진
-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선정절차 보완방침 발표(12.10)
 - 부지선정절차에 주민투표절차 도입, 타지자체도 참여기회 보장 등

□ 주요쟁점 또는 문제점

- 주요 쟁점이었던 주민여론 수렴문제는 상당부분 해소

□ 향후 대책

- 부지선정절차 보완방침에 따른 새 유치공모 공고안 마련
- 타 유치신청지 적극 발굴·홍보

24.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 추진단계 : 추진중

- 현재 입법안, 공공부문 대책 수립중에 있음

□ 추진현황

<노동부>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사용자의 남용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 2년여간 노사정위에서 대책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지난 7.25 논의결과를 정부로 이송 → 관련법 제개정안 관계부처 협의실시 (11.21~12.1)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추진단 구성('03.11.8), 동 추진단에서 대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자체대책 수립중(12.10까지 제출)
 - ※ 노동부차관(단장), 재정·행자·기획예산처·교육·정통·노동부 국장으로 구성

<기획예산처>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 조사('03.4~10월)

□ 주요쟁점 또는 문제점

-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제한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의견이 상충
 - 노동계: 대사업무 축소, 파견기간 제한,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근로자성 인정
 - 경영계: 대상업무 확대, 파견기간 제한 완화, 기타 노동계 주장 적극 반대

□ 향후대책

-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계속)
 -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문제는 노사정위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보호방안 마련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실태조사와 각 부처의 자체대책을 토대로 종합대책(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확정

2003년도

조정백서

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실
총괄심의관실 (Tel) 3703-3859

발행일 : 2004.3.20